

제423회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3월6일(목)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7717)
-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7714)
-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7713)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8169)
-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김병주 의원 등 82인 발의)(의안번호 2207678)
-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지속발전 지지 결의안(김건 의원 등 108인 발의)(의안번호 2207927)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8)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8)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3)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2)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8)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9)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0)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8)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4)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3)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2)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2)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9)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7)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3)

22.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9)
2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7)
24.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7)
25.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김예지 의원 등 47인 발의)(의안번호 2207186)
26.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우리 정부의 살상용무기 지원 및 파병 등 일체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이언주 의원 등 74인 발의)(의안번호 2206032)
27.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임미애 의원 등 27인 발의)(의안번호 2207249)
28. 장생 탄광 수몰 사고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 촉구 결의안(김준혁 의원 등 33인 발의)(의안번호 2207447)
29.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결의안(김기현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205464)
30.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4)
31.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5)
32.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2)
3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3)
3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836)
3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009)
3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888)
3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182)
3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603)
3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803)
40.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0)
4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2)
42.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9)
43.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7)
4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4)

-
4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1)
46.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84)
47.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8)
48.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5)
49.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9)
5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6)
5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75)
5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2)
5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6)
5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6)
5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5)
5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7)
5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3)
5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2)
5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9)
6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4)
6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9)
6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2)
6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2)
6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2)
6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5)
-

상정된 안건

1.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7717) 7
2.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7714) 7
3.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7713) 7
4.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8169) 7
5.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김병주 의원 등 82인 발의)(의안번호 2207678) 7
6.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지속발전 지지 결의안(김건 의원 등 108인 발의)(의안번호 2207927) 7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8) 7
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8) 7
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3) 7
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2)	7
1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8)	7
1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9)	7
13.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0)	7
1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8)	7
15.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4)	7
16.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3)	7
17.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2)	7
1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2)	7
19.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9)	7
20.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7)	7
21.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3)	7
22.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9)	7
2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7)	7
24.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7)	7
25.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김예지 의원 등 47인 발의)(의안번호 2207186)	7
26.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우리 정부의 살상용무기 지원 및 파병 등 일체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이언주 의원 등 74인 발의)(의안번호 2206032)	7
27.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임미애 의원 등 27인 발의)(의안번호 2207249)	7
28. 장생 탄광 수몰 사고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 촉구 결의안(김준혁 의원 등 33인 발의)(의안번호 2207447)	8
29.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결의안(김기현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205464)	8
30.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4)	38
31.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5)	38
32.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2)	38
3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3)	56
3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6)	56
3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9)	56
3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8)	56

3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182)	56
3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603)	56
3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803)	56
40.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0)	56
4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2)	56
42.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9)	56
43.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7)	56
4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4)	56
4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1)	56
46.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84)	57
47.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8)	57
48.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5)	57
49.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9)	57
5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6)	57
5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75)	57
5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2)	57
5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6)	57
5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6)	57
5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5)	57
5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7)	57
5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3)	57
5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2)	57
5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9)	57
6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4)	57
6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9)	57
6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2)	57
6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2)	57
6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2)	57
6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5)	57

(14시21분 개의)

○소위원장 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앞서 소위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6항, 제17항, 제50항 및 제64항, 이상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여 같이 심사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요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인요한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앰뷸런스를 제대로 대한민국에 맞는 걸 만들었는데 그 앰뷸런스가 법이 안 돼 가지고 심폐소생이 불가능한 앰뷸런스로 돼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너무…… 이것 회의록 기록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2인승 승합차가 안 좋아서 이번에 법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앰뷸런스가 나와요. 앞으로는 법으로 이걸 규제해서 제대로 했어요.

나는 이 남북관계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우리 여야의 공동 상대가 미국 북한 중국, 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사지만 여기 외교통일 쪽에 들어오게 된 것은 북쪽에 관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정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빌리 브란트가 독일에서 정책을 여야 합의하에서 이렇게 나간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렇게 나간다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19년 만에 통일이 됐습니다.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외교통일위원님들한테 모두, 지금 우리 보좌관들보고 빌리 브란트 그걸 연구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뭔지 좀 파악하고 벤치마킹하고 제가 여기 비례대표로 있는 동안에 이게 꼭 실현됐으면, 앰뷸런스 법도 이번에 통과시키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합의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오늘 의견들을 다 검토해 봤는데 죄송하지만 오늘 여기에 법 발의한 분들이 귀한 발의를 많이 했지만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북쪽을, 우리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하고 저하고 북하고 굉장히 거래를 많이 했는데……

○**이용선 위원** 거래?

○**인요한 위원** 표현이 좀 그렇다.

(웃음소리)

끌치 아픈 일을 많이 했는데, 그것 좀 정정하세요. 거래라고 하지 마세요.

○**이용선 위원** 트럼프가 좋아해서, 트럼프가 좋아하는 표현.

○**인요한 위원** 내가 완전히 트럼프에 미쳤어요. 맨 트럼프 책만 읽다 보니까 이렇게 돼 버렸어요. 우리가 트럼프를 상대해야 되고 중국도 상대해야 되고 북한도 상대해야 되고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 좀 건설적이고 지속적인 팔리시(policy)를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진행상 말씀드리고.

나이가 많아지니까 말도 길어지네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건** 양해해 주시면 오늘 심사를 한 1시간 반 정도 외교부 법안을 하고 30분 정도는 재외동포청 법안을 한 다음에 한 10분 정회를 하고 나머지 1시간 반을 통일부 법안을 해서 한 6시에 끝내는 걸 목표로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외교부, 재외동포청, 통일부의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1.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7717)
2.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 번호 2207714)
3.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7713)
4.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8169)
5.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김병주 의원 등 82인 발의)(의안번호 2207678)
6.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지속발전 지지 결의안(김건 의원 등 108인 발의)(의안번호 2207927)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8)
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8)
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3)
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2)
1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8)
1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9)
13.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0)
1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8)
15.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4)
16.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3)
17.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2)
1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2)
19.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9)
20.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7)
21.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303)
22.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9)
2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7)
24.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7)
25.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김예지 의원 등 47인 발의)(의안번호 2207186)
26.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우리 정부의 살상용무기 지원 및 파병 등 일체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이언주 의원 등 74인 발의)(의안번호 2206032)
27.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임미애 의원 등 27인 발의)(의안번호 2207249)

28. 장생 탄광 수몰 사고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 촉구 결의안(김준혁 의원 등 33인 발의)(의안번호 2207447)

29.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결의안(김기현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205464)

(14시26분)

○**소위원장 김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부터 제29항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결의안까지 이상 2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총 3건 비준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3건 비준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입니다.

자료 4쪽부터 보시면 협정 전문 개정은 양국의 협력 강화 및 조세 회피 방지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 5쪽 상호 합의 절차 신청 국가를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확대한 것은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6쪽 정보교환에 관한 신설조항은 양국 간 조세 정보 교환 강화로 국제적인 조세 회피 및 탈세 방지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7쪽의 협정 혜택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의 판단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한 것은 우리나라의 과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개정은 기존 협정의 목적과 취지를 유지하면서 그 효과를 보다 강화한 것으로 비준동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음, 11쪽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양국 간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수용 및 보상, 한쪽 국가와 상대국 투자자 간의 투자분쟁 해결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우리나라가 바레인에 대한 투자진출국인 점, 바레인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들의 중동 시장 진출 확대가 예상되는 점 등에서 동 협정안에 대한 비준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안도라공국의 과세권 경합을 조정함으로써 양국 국민·기업의 이중적인 조세부담을 방지하여 양국 간의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탈세 및 조세 회피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한국과 안도라 간 교류 규모가 작고 동 협정으로 인한 투자 유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고 조세징수협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는 하나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과 조세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비준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다음은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지금 금방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잘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3개의 협정, 의정서, 협약 모두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모하려는 것인 만큼 비준 동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러면 의견 있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은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같은 자료 39쪽입니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인데요. 이 협정은 유엔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41쪽입니다.

해양유전자원에 관한 정보와 이의 공유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협상 과정에서 선진국그룹과 개발도상국그룹의 의견으로 디지털서열정보의 범위나 기여금의 액수, 금전적 이의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 등이 협정에 담기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44쪽 구역기반관리수단 설정과 관련하여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어떤 구역에서 특정한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수단에 대한 당사국의 제안서 제출과 과학기술기구의 예비 검토, 제안서에 대한 협의 및 평가와 당사자총회에서의 결정, 이외에 이의 있는 당사자의 선택적 불구속 선언 및 과학기술기구의 모니터링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당사자가 스크리닝을 통해 그 실시 여부를 결정하되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조사 범위를 결정하고 환경영향평가 실시보고서에 대해서 과학기술기구에서 심의하며 과학기술기구와 당사자들은 협의된 활동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우려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협정안은 개발도상국, 군소도서국, 최빈개발국 등에 역량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연구장비 지원, 시스템 구축 등 해양 관련 기술을 이전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40쪽입니다.

이 협정은 해양유전자원 이익의 공정한 배분과 해양생물다양성 보호,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국제협력 강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할 때 협정 비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양유전자원 관련 정보와 이익을 공유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적 이익이 감소하는 부분 그리고 기여금 납부 의무로 국가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이 협정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협정은 바다 표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공해 수역에 대해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한 20여 년 동안 협상을 한 끝에 2023년 6월에 유엔에서 채택된 그런 협정입니다. 공해의 자유를 최대한 누리려는 선진국하고 또 공해의 유전자원에 대해서 이익 공유를 주장하는 개도국 그런 양쪽의 입장이 적절하게 반영된 합리적인 규범체계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기존 유엔해양법협약 체계하에서는 공해에서의 생물다양성 보호와 적절한 이용에 관한 그런 구체적인 국제규범이 없습니다. 이 협정은 공해에서의 인간 활동을 관리함으로써 공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큰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공해의 생물다양성 보호 및 활용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우리의 국익을 보호하고 또 국제규범 형성의 선도국가로서 위상을 제고하고자 이 협정을 비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비준동의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러면 의견 있는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 기여금은 얼마씩 냅니까?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아직 정해진 건 없고 지금 막 비준이 시작됐기 때문에, 총 60개국이 비준이 돼야지만 발효가 되거든요. 그다음부터 구체적인 기여금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논의될 겁니다.

○**권칠승 위원** 기여금을 얼마 정도로 한다 이런 데 대한 아주 러프한 기준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이 되리라고는 생

각을 안 합니다.

○**인요한 위원** 전의 무슨 예가 없어요?

○**외교부국제법률국장 황준식** 국제법률국장 황준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에 저희가 가입하고 있는 해양 관련된 기구들을 보면 국제해저기구, 국제해사기구, 국제수로기구, 생물다양성협약 이런 부담금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희가 유엔에서 내고 있는 그런 부담금 기준에 비춰 봤을 때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선 위원** 여기 보면 해양생물다양성 보호,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협력 강화 등등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셨는데 한국이 이런 공해를 비롯해서 해양수산산업에 대해 상당히 발달된 국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해양생물다양성에 사실 저희가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측면도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조약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경제적 이익 감소, 기술경쟁력 약화 이런 마이너스 요소를 적시하셨는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측면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그건 제 검토보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방금 기여금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정확한 액수가 들어가지 않은 게 협정 체결 과정에서 계속 선진국그룹이랑 개발도상국그룹이, 선진국에서는 최대한 기여를 덜하려는 쪽으로 가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받는 쪽으로 하다가 타협안을 찾아서 어쨌든 협정은 이루어진 거고 우리나라는 선진국그룹에 속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기여하는 쪽으로, 기여받는 쪽보다는 기여하는 쪽으로 들어가겠지만 규모는 지금은 예상을 할 수는 없으나 선진국그룹 전체가 같이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용선 위원** 우려할 건 없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예. 불리한 상황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정보 공유 차원에서는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선 위원** 알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까지 비준한 국가가 한 17개 국가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비준을 하면 빨리 비준하는 국가 중의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서두르는 이유가, 어쨌거나 하여튼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협상이 이루어질 거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주도적으로 협상에 참여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도 국익을 보호하면서 간다는 측면에서라도 더 비준을 빨리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용선 위원** 예, 좋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또 다른 말씀……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및 제6항 군선한 한미동맹 관계 지속발전 지지 결의안 이상 2건의 결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이 2개의 결의안에 대해서 한미동맹 관계 강화를 지지하는 취지와, 특히 미국에서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시점에서 결의안의 의미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개 안의 구체적인 문구는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 문구와 관련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두 안의 비교표를 62쪽에서 67쪽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66쪽의 김병주 의원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초기 종전 지지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한미동맹 지지와의 부합성 등을 고려해서 채택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반드시 필요한 문구나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대안으로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다음은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2개의 결의안 모두 한미동맹을 지지한다는 근본적인 취지가 있는 만큼 저희 정부로서는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고요.

하지만 이 2개의 결의안이 조금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잘 정리를 해서 하나의 강력한 그런 결의안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러면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 위원** 제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데요. 저는 동맹 결의안이 지금 적절한가를 좀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지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의 트럼프 방식은 한미동맹의 특수성을 강조할수록 더 많이 내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의 방식인데 지금 당연한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미국과의 향후 협상에서 협상의 위치를 우리가 불리하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동맹국이나 우방국부터 때리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우리가 혈맹이니 특수한 동맹을 하고 국회까지 지지를 하면 그만한 대가를 내놓으라는 것이 트럼프일 텐데 구태여 지금 이걸 내 가지고 향후에 정부의 협상에 관해 가지고 오히려 저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저는 오히려 이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결의안 내는 것을 반대합니다.

○**인요한 위원** 혹시 그거에 대한 정부 쪽의 반론이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을 제가 이해는 하지만 사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이나 한미동맹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나 국회가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에 어떤 빌미가 돼서 우리에 대한 압박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를 해서 이런 결의안을 안 하는 것보다는 저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건** 권칠승 위원님.

○**권칠승 위원** 우리가 그동안 이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이런 걸 한 몇 번 정도 냈습니까? 이거 처음은 아니잖아요.

○**김준형 위원** 그럴 것 같은데요. 많았을 것 같은데요.

○권칠승 위원 몇 번 정도 됩니까? 이거 미국 대통령 바뀔 때마다 내는 건가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제가 지금 정확한 기록은 안 갖고 있습니다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지금 21대 국회 때 가결된 결의안이 3건이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21대 때 세 번 가결했고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예.

○이용선 위원 가장 최근은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최근에 한 게 21대 2023년 2월에 있었습니다. 그때 70주년 기념이었기 때문에……

○인요한 위원 워낙 트럼프가 괴팍해서요 지금 얘기가 설득력이 있거든요.

○권칠승 위원 위원님, 기록됩니다.

(웃음소리)

○인요한 위원 괜찮아요.

○권칠승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미국도 의회에서 이런 거 냅니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예, 미국에서도 동맹 결의안에 대한 발의는 굉장히 많았고요. 의결까지 간 경우가 최근으로 보면 작년 2023년 4월에 채택된 게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최근은 그런데……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이때도 70주년 기념으로 해서 했고 그전에도 2022년에 채택이 된 게 있고 발의 전수로만 보면 거의 매년 발의는 돼 왔었습니다.

○권칠승 위원 채택은?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채택된 건 2022년에 한 번, 2023년에 한 번 그렇게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면 자주 하는 거네.

○소위원장 김건 이번에도 토머스 스워지 의원인가 누가 발의하지 않았나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2025년 1월에 발의된 게 1건 있고 아직 가결까지는 안 갔습니다.

○인요한 위원 몇 년이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올해 1월 자에 한미동맹의 중요성 및 한미 관계 심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위성락 위원님.

○위성락 위원 존경하는 김준형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나름 또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다 싶긴 합니다만 이것은 국회의 입장 표명이고 또 종래에 보면 우리 국회가 이런 입장 표명을 하면 미국 의회에서 유사한 결의도 있고 하니까 미국 의회의 반향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회가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반드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주문을 촉발한다고 연결, 일부는 되겠습니다만 저는 꼭 그렇게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의회에도 다양한 견해가 있고 여야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한국 국회가 한목소리로 동맹의 강화를 제기하면 미국 의회에 또 우리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분도 많이 있을 터이니까 원군을 얻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일정한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또 지금 여야의 큰 정당 두 군데에서 유사한 안을 제기한 상황이니까 이 논의를 진행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준형 위원** 부연해서 일단 기록을 위해서라도 저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계속 논의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반대하는 이유가 지금 대행 정부도 좀 관성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미가 얼마나 혈맹이고 특수한 관계를 얘기하면 그것을 이해하는 트럼프의 정책이냐? 국회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한국 전체는 여전히 미국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그 절실히 필요하는 데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정당성을 제공할 거라는 데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제가 낸 결의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유무역 수호 지지 결의안인데 제가 여기에 대한 다른 분들의 서명을 잘 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유럽이나 멕시코나 캐나다가 어떤 의미에서 연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아무리 트럼프라도 아무리 한미동맹이라도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일종의 대응책이 될 수 있는데 자꾸 트럼프의 프레임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다, 저는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반대를 합니다.

○**인요한 위원** 대개 위원장님이 발언을 안 하는데 존경하는 위성락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외교부 경험이 있는 분으로서 한 말씀 좀 듣고 싶어요.

○**소위원장 김건** 제가 위원장이라서……

사실 제 생각은 위성락 위원님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해서 플러스가 되는 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보다는 많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미국하고 얘기할 때 아주 좋습니다, 특히 미 의회 접촉해서 얘기할 때. 아까 1차관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결의를 했으니까 미국 측에서도 좀 상응하는 결의안 같은 걸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외교에도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지가 않아서.

그런데 사실은 이게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 출범하고 신행정부하고 관계를 잘 갖고 가자는 그런 결의안이다 보니까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사실 다음에는, 늦어지면 조금 의미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좌우간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못하게 되면 그냥 아예 못하게 될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의견을 내셔서 가급적이면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웅 위원** 저도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다들 일리가 있는데 저희 국회가 나름 품격이 있는데 계산을 해 가지고 득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작은 전술적인 것보다는 큰 틀에서 트럼프를 대하는 방법도 제가 볼 때는 원칙 또 정도가 오히려 낫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논의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여야 당이 결의안 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모여 보니까 안 하는 게 더 드일 것 같다 해서 안 했다는 얘기가 오히려 더 이상한 뉴스가 될 수도 있고, 이거 다들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아예 얘기가 안 나왔으면 모르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 결의안 논의하다가 트럼프 대통령 성향으로 볼 때 안 하는 게 득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다 하면 그게 또 약간의 무슨 가십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문구도 좀 잘 만들고 해서 하는 게 맞겠다 보고요. 시기를 안 놓치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2개 읽어 보니까 둘 다 좋은 말씀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문구들이 워낙 많아서 이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는 것 중에 제의하는 거는 여기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하셨지만 한미동맹 해 온 것에 대한 그동안의 어떤 평가, 역할 또 다시 한번 재규정 리마인드 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정의하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노력해 나가자는 그런 기본 컨셉이라고 하나요? 그것들을 이렇게 한 3개 4개를 딱 제목을 정해 놓고 양쪽 결의안에서 그에 부합하는 걸 가져와서 문구 정리하는 게 그나마 좀 쉽게 단일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문구를 만들 때 2개 다 분류가 되잖아요. 다만 제가 볼 때 나머지는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쟁점은 아까 말한 대로 우크라이나 문제, 전쟁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게 하나의 쟁점이 있고 또 비핵화 표현 중에 한반도·북한 비핵화가 섞여서 쓰이고 있어요. 그것도 저번에 상임위에서 일부 또 논란이 있었습니까만 그 용어 자체를 지금 어떤 걸 쓸 거냐도 쉽게 얘기가 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만 좀 주의하고 한반도 평화라든가 동맹의 굳건한 발전 이런 것들이야 다른 논란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일단 수석전문위원하고 따로 문구 조정을 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단일안을 만드는 걸로 해서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권칠승 위원님.

○권칠승 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비핵화 문제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문구 표현상의 문제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정리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위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하고 비핵화를 한반도로 할 것인가 북한으로 할 것인가 이 2개만 일단 정리를 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압축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데 먼저 우선 정부 측에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는 게, 우크라이나 문구, 우크라이나 종전을 빨리 하자 이런 거 하면 미국은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이게 또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 입장이 있어서 이걸 외교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그다음에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현재 정부의 입장은 뭔지 먼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었지만 한미동맹 결의안이라는 그 성격 자체를 봤을 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입장이 담기는 것이 결의안 전반적인 그런 성격에 조금은 안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여야가 검토해서 논의되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는 외교장관이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혼용되어 왔었고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는 명확하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이 결의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그런 고려도 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북한 비핵화라는 명확한 표현을 집어넣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김건 권칠승 위원님.

○권칠승 위원 제가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자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건 조금 안 맞다는 느낌을 저는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별도의 결의안을 통해서 입장을 정리하는 게 오히려 더 시의성도 있고 또 타이밍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관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비핵화 문제는 북한 비핵화를 하면 또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들을 가져올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측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따라간다는 느낌도 좀 들고요.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표현해 왔던 거는 한반도 비핵화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내부의 아무런 공감대나 또 공론화 과정 없이 그렇게 입장을 바꾼다는 것도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게 모든 경우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미국의 이야기를 또 다른 여론들을 방어해 내는 데 훌륭한 용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차관님.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 용어를 이렇게 혼용해서 쓴 지가 벌써 한 10여 년 이상이 됐습니다. 저희가 기록을 쭉 살펴보니까 2013년부터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썼다가 2017년에도 한미안보협의회 공동 성명 같은 데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같은 해에 또 다른 결 보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면서도 그게 북한 비핵화를 의미한다는 게 모두가 다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전혀 그 둘 사이에 어떤 용어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논란이 크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반드시 북한 비핵화 용어를 써야 되겠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그런 쪽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한반도 비핵화가 결국에는 북한 비핵화를 의미하는 게 명확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저는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에는 핵이 없고 남한에는 핵이 있는 것들을 허용하는 거잖아요.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 비핵화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남한은 비핵화를 할지 안 할지 말이 없는 거잖아요, 용어 자체가.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을 이유가 있나요?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그런데 지금 한국은 NPT 조약에 명확하게 가입하고 있고 비핵화 의지를 항상 확인하고 있는데……

○**권칠승 위원** 그러면 더 잘됐네요. 그러면 표현하는 데 더 문제가 없네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를 혼용했던 이유는 북한은 핵 능력이 있고 핵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디뉴클리어라이즈(denuclearize) 하자는 거고 한국에는 그런 핵 능력이나 핵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용어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만약에 북한 비핵화라고 했다고 해서 그러면 한국의 핵무장 길을 열어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것은 좀 저는……

○**권칠승 위원** 예전에 남한에 전술핵이 있었잖아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부시 1기 행정부 때.

○**권칠승 위원** 여기도 있었잖아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예, 그 이전에……

○권칠승 위원 그때도 우리가 NPT 가입국 아니었나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게 우리 컨트롤 안에 있는 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하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요. 이걸 하면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방어해 낼 수가 있잖아요.

○소위원장 김건 김준형 위원님.

○김준형 위원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특히 지금 오늘 또 다뤄야 될 29번 결의안이 핵무장 촉구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나오는 핵 잠재력 보유가, 국제 사회에서 다음으로 의심되는 나라, 아주 위험한 나라 중의 하나가 한국으로 거론이 됩니다. 심지어 뉴클리어 레이턴시(nuclear latency)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위장 핵 개발론이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에서 오히려 한국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더 담을 수 있는, 전 세계의 비핵화와 반화산에 관한 의지를 밝히는 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훨씬 더 국제사회에 호소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건 위성락 위원님.

○위성락 위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논쟁을 계속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저도 북한 핵 문제에 오래 관여를 해 왔습니다만 저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가 혼용되는 오랜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항상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선호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협상을 했는데 북한이 듣지 않거나 또 중국이 듣지 않거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혼용돼 왔고 그러나 우리 측의 의도는 북한의 비핵화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혼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용어라는 것은 상황의 흐름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다른 의미 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비등합니다. 핵무장론을 지지하지 아니하는 보수 진영의 리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요 언론도 이걸 강력히 프러모트(promote)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잘못 논쟁을 벌이면 여기에 의미 부여가 되어서 우리가 여기 결론을 못 냅니다. 결론을 못 내는데, 아직까지는 한국 내에서는 혼용돼 있는 거고 새로운 의미 부여가 돼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올라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논쟁은 너무 계속하지 말고 그냥 종래대로 한반도 비핵화로 놔두고요. 만약에 한반도 비핵화를 완전히 버리면 권칠승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나 김준형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문제로 이게 의미가 전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에 국한하고 남한 비핵화는 모호하게 놔두고 남한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아까 말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초기 종결 부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이 전체의 맥락 흐름에서 볼 때 조금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그건 빼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리고 그 문제, 한국의 핵무장을 어떻게 하느냐하면 그건 나중에 다른 계기에서 논의하는 게 좋지 여기서 거기까지 섞어 놓으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김기웅 위원님.

○김기웅 위원 우선 역사 한번 쭉 리뷰하면 91년 11월 8일 날 노태우 대통령이 비핵화

선언을 했지요. 11월 8일 날 비핵화 선언을 하신 이유가 당시에 부시 정부 입장도 있지만 그때 들어와 있던 우리 전술핵도 있었고 북한의 비핵화가 급해지니까 사실은 그 선언을 하고 그 해 말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북한에 제의해서 타결해서 그다음 해 2월 19일 날 발효를 시켰잖아요, 기본합의서랑 같이. 그리고 나서 우리 쪽은 다 빼쳤는데 저쪽이 핵무기를 가지기 위한 개발을 계속하면서 이제 한반도 비핵화의 가장 큰 숙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중요한 목표가 된 거지요.

왜 이 용어가 헷갈리냐하면 우리 모든 국민이 원하는 건 이 한반도에 핵이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할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인 거지요. 그런데 당면해서 지금 해야 할 일은 북한의 비핵화가 당면 과제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가 궁극적 목표라는 걸 부인하지는 않고 대신에 이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주력해야 될 부분은 남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가 핵심 과제가 돼 있기 때문에 용어가 헷갈리고 개념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여기 김병주 의원안도 64페이지 비교표 보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써 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65페이지를 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써 놨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혼용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게 지금 한미동맹의 목표와 역할이잖아요. 한미동맹이 남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건 좀 웃기지 않습니까? 난센스지요,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주한미군의 전술핵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게 아니라 주한미군이 옛날처럼 전술핵을 다시 배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미군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미국이 자기들이 전술핵을 배치할지 안 할지 우리가 뭐,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니까 다 나가라. 너희들이 배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제안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한미군의 전술핵 배치까지 다 열어놓고 생각했을 때 한미동맹이 그런 것까지도, 주한미군이 전술핵을 갖지 않도록 한미동맹은 노력한다 이렇게 쓰는 건 난센스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의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다라는 건 다 동의하는데, 맞고, 궁극적 목표는 그게 맞고요. 그런데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한미동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남한의 비핵화라는 걸 집어넣어서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건 난센스 같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앞에 혼용이니 논쟁하지 마시고 64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이 서문이지 않습니까. 서문에서는 간략히 해서 이 표현들을 다 없애 버리고 그냥 좋은 말 몇 개 쓰고, 서문이니까. 결의안은 지금 김병주 의원이 쓴 이 표현 그대로 받으면 문제가 없어요. 여기 지금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는 게 서문에 나오고 두 번째는 북한 비핵화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문에 있는 표현을 좀 뭉쳐서 틸고 뒤에 있는 김병주 의원안에 북한 비핵화 그대로 돼 있으니까 그대로 받아서 쓰면 그쪽에서 낸 원안이 사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불필요한 논쟁을 할 필요가 없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가 맞겠지만 한미동맹이 당면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은 북한 비핵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겠느냐. 한미동맹이 남한의 비핵화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건 언뜻 난센스 같

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양쪽 안이 괜찮기 때문에 김병주 의원안 그대로 받고 앞의 서문에 있는 것만 좀 뭐랄까요 다른 좋은 표현들로 대체하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괜히 개념 논쟁 계속해 봐야 어차피 뜻은 같은 것 같아요.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다 동의하시는 거고요. 대신에 우리가 지금 주력할 부분은 남한보다는 북한 비핵화가 당면 과제다 그것 다 동의하시고 한미동맹이 그걸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도 다 동의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문구 조정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건 인요한 위원님.

○인요한 위원 외교적인 표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할 건지는 위성락 위원님께서 제시한 게 맞는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문제는 이게 좀 늦게 나가면 전쟁이 끝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별도로 다루는 것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김건 제가 한마디만 좀 말씀을 드리면 북한 비핵화가 우리가 원하는 한반도 비핵화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핵무기가 없고 미국의 전술핵은 이미 철수해서 우리 남한 지역에는 핵무기가 없고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북한의 비핵화만 이루면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건 북한 비핵화를 의미합니다.

의미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다른 뜻으로 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할 때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6자 회담을 했는데 갑자기 북한 대표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뭐라고 그랬냐 하면 ‘여기 분명히 한반도 비핵화라고 써 있다, 한반도 비핵화’ 그러면서 요구한 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만 비핵화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북한을 핵으로써 위협하지 않을 의무가 6자 회담 참가국 모두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미국뿐만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을 핵으로 위협하지 않아야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가서, 그다음에 소위 전 세계 비핵화 이런 개념으로 지금 북한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러시아 대표가 화들짝 놀라 가지고 저렇게 하면 러시아에 어떤 의무가 주어지니까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안보리 결의에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가 원하는 바인데 우리가 원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뜻은 북한 비핵화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쓸 때는 북한 비핵화라고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반도 비핵화가 낫냐, 북한 비핵화가 낫냐 이렇게 너무 논쟁을 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다른 대안은 없는지 한번 정부 측에서 하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찾아주시면 어떨까, 가령 예를 들어서 한반도라든가 북한이라든가 특정 안해도 그 뜻이 통한다면 그렇게 하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위원장님, 저희가 전문위원회에서 양 안을 다 섞어서 최대한 양쪽 의견이 다 들어 있는 쪽으로 대안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김건 의원안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부분은 어차피 명확한 목표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고 문제는 서문에 한반도의 비핵화 부분은 아까 그걸 빼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떻겠냐 하셨는데 이것이 들어가면 서문에는 한반도 비핵화가 들어가고 주문, 결의문 항에는 북한 비핵화를 명확히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할 때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결정을

해 주셔야 저희가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웅 위원** 김병주 의원안 서문 뒤에 북한 비핵화 이것 받으면……

○**소위원장 김건** 위성락 위원님.

○**위성락 위원** 너무 미시적으로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김기웅 위원님 제시하신 대로 그냥 현행대로 김병주 의원안의 용어를 차용하면 우리는 섞어 쓰는 걸로 이런……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김기웅 위원님은 한반도 비핵화는 빼고 가지고 하셔 가지고……

○**김기웅 위원** 여기 보시면 북한 비핵화라고 돼 있잖아요. 서문에 이것을 살리자는 거지요, 김병주 의원안을. 그러면 된다 이거지.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북한 비핵화만 살리자라고 해서……

○**권칠승 위원** 사실 이건 앞뒤 문맥을 생각 안 하고 용어를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위성락 위원** 아까 얘기한 건 북한 비핵화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혼용하자는 뜻 아닌가요? 혼용 아닌가요?

○**김기웅 위원** 아니에요. 한미동맹의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게 우리 비핵화도 포함한다는 게 저는 난센스라고 본다 이거지요. 이건 우리가 어디 가서 주제 발표하는 게 아니고, 주제 발표할 때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인데 이건 한미동맹이 뭘 할 것인가 봤을 때는 남한의 비핵화도 거기 목표다라고 하는 건 난센스 같다 이 말이지요.

○**위성락 위원** 아니, 한미동맹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해서 미국이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전술핵이나 무슨 전략핵을 운용하는 데 제약이 꼭 되지는 않습니다. 그걸 피해 가는 방법을 미국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전술핵 있을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미국은 NPT 체제하에서 그렇게 운용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NCND도 있고. 이게 비핵지대가 아닌 한, 비핵화가 아닌 한 미국은 운신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이게 논란의 대상이 돼 있는 의미 부여가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논쟁을 계속하면 낭비적일 것 같아요. 그냥 혼용하는 걸로 두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혹시 정부 측에서 대안 표현 같은 건 없을까요?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없다거나 이렇게 좀 풀어 쓴다거나……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당장 떠오르는 건 없고, 하여튼 저는 위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 말씀대로 다 혼용을 할 수 있으면 혼용을 하고요. 그런데 혼용하는 게 오히려 혼동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면 하나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권칠승 위원** 그리고 문맥에서 봤을 때도 어떤 의미로 썼다는 게 명백하게 앞뒤 문구를 조정하면 그게 기술적으로는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같이 해야 되는 다른 결의문하고 완전히 모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가당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가당착이 될 수 있는데……

○**김기웅 위원** 제가 의견을 내면…… 자, 봅시다. 핵무기가 없는, 핵 없는 한반도를 지향하며. 예를 들어서 앞의 부분을 ‘핵 없는 한반도를 지향하며’ 이렇게 해 놓고 ‘한미동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간다’라고 하면 절충안이 될 수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이 절충안 중에 딱 궁금한 것은 김홍균 차관님, 우리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비핵화, 아까 비핵지대화 아니면 팬찮다 했지만 사실은 비핵화 공동선언에 보면 배비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상호 사찰을 해야 되는데 주한미군에 핵이 있는지 없는지 나도 나가서 주한미군 기지를 털어봐야 되겠다, 우리만 볼 게 아니다라고. 이유는 아무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 못 해 봤지 않느냐, 한국에 있는, 남한에 있는 모든 미군 기지를 자기들이 들어가서 봐야 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결국 그 비핵화 공동선언에 보면 이 땅에는, 한반도 땅에는 어쨌든 핵무기가 들어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배비 이런 것 다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게 아니라도. 그러니까 배가, 핵잠수함이 지나가는 건 비핵지대화에 해당되는 거지만 우리 땅에 들어와서 핵무기가 배치돼 있는 건 거기에 분명히 저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비핵화 얘기를 하실 때 비핵화 공동선언 문구 5개를 봐야 되는데 그중에 분명히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이 표현을 잘못 쓰면 한미동맹은 앞으로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남한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약속하는 걸로, 요구하는 걸로 읽혀질 수도 있다, 저는 그걸 우려해서 우리가 그 표현을 굳이 안 쓰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건 위성락 위원님.

○**위성락 위원** 자꾸 다른 논란으로 막 이어지는데 간단히 한 마디만 클래리파이(clarify)하면 미국의 핵 정책은 그런 비핵화 선언에도 불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배비, 반입 이걸 다 못하게 돼도 미국은 할 수 있게 그걸 NCND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잠함이 들어와도, 그것 사실 반입이거든요. 반입인데 없다고 하고 부인하면서 운용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김기웅 위원** 미국이 운용할 수 있는 거랑 우리 국민이, 세계인이 볼 때 문제가 있지요.

○**위성락 위원** 아니, 우리가 비핵화 선언을 했다 해서 미국이 한반도와 주변에서 핵을 운용 못 하는 건 아니고 또 우리로서는 운용하는 게 좋은 겁니다,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권칠승 위원** 우리가 북한 비핵화 결의문을 내면서 또 하나의 결의문은 핵무장 촉구를 결의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김기웅 위원** 핵무장 촉구결의안은 안 하고.

○**권칠승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것을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잖아요.

○**김기웅 위원** 그건 안 하면 되니까. 지금 얘기는……

○**권칠승 위원** 아니요, ‘안 하면 되니까’가 아니고 이게 지금 안건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여당의 대표 지내신 분이.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옆에서 보면 완전히 웃기는 짜장이지요.

○**인요한 위원** 핵 보유를 북쪽이 포기 안 하면 남한도 어떤 억제로 핵을 가져야 된다는 논리 같아요, 그것은.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그냥 이야기하면 북쪽에 비핵화를 위해서 비핵화 해라라고 요구하고 우리는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경우가 맞나 싶기도 하고. 또 29번 항에 이런 게 올라와 있는데 이건

우리 스스로 논리가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문맥을 혼용하는 것까지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맥에서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하나만 따로따로 떼서 이야기하면 논란이 되겠지만 문맥을 봐라 이 정도로 우리가 명분을 세우고. 여기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지만 뒤에 메이드 인 코리아만 해당된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렇게라도 이야기할지도, 지금 그런 이야기가 좀 깔려 있는 거잖아요, 전술핵 이런 이야기 할 때 보면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약간은 방어막을 쳐서 용어를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예.

그래서 참고로 그때 북한 대표가 주장하던 게 이게 한반도 비핵화이기 때문에 사찰은 우리만 받는 게 아니고 중국 러시아도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 비핵화다 이렇게 해서 용어를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 우리가 쓸 때는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많이 쓰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또 다른 우려이신 건데……

○권칠승 위원 그런데 반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신랄한 공격을 받을 것 같거든요. 우리는 비핵화하고 누구는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서 더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김기웅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김병주 의원안 중의 앞의 부분에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끝내고 그다음 페이지에 가서 뒷부분에 ‘협력을 확대하며,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북한 비핵화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권칠승 위원 예, 훌륭한 의견이신 걸로 보입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 용어, 앞 페이지 김병주 의원안 중에 예를 들면 ‘전략동맹으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끊어 버리고 뒤 페이지에 가서 ‘협력을 확대하며,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쓰면 적절히 융합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절충안을…… 그러니까 당면 목표가 이거라는 것과 궁극적 목표라는 것을 잘 섞은……

○권칠승 위원 저는 그런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건 두 분 안 계실 때 권칠승 위원님만 동의해 주시면 바로 그냥 합의해서, 동의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웃음소리)

그러면 그런 방향에서 수석전문위원께서 합치는 문구, 그러니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문안은 빼고 그다음에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안을 넣어서 한번 양안을 합친……

○김기웅 위원 문구를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서 다시 한번……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정리해서 오늘 소위 끝나기 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래서 마지막에 돌려서 한번 검토를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4건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

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심사자료 Ⅱ권입니다.

먼저 권칠승 의원안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국제개발협력에 따른 인권 향상의 대상 범위를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에서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으로 확대하는 것은 자칫 인권 향상의 대상이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2쪽, 두 번째 내용은 국제개발협력 기본원칙에 세계인권선언 및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존중을 추가하는 것인데 인권 보호 강화의 취지와 다른 호 규정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6쪽, 민형배 의원안은 다섯 가지 내용입니다.

9쪽의 조문대비표에서 보고드리면, 먼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은 현행법과 개정안 공히 이 법이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기본법임을 나타내는 규정인데 다른 법률들이 이 법의 목적과 기본정신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는 현행 규정도 의미가 있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는 개정안의 규정 또한 다수의 법률 간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양자를 병기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국제개발협력의 날 지정 규정은 현재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 협력의 날 행사를 안정적으로 개최·운영하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12쪽, 위원회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인데 먼저 2항의 국제개발 협력 사업 간 연계·조정 업무는 위원회 업무가 아니라 이를 위탁하게 하는 규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통계 관련 전자정보시스템 운영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14쪽과 15쪽의 조례 제정 근거 마련 조항과 포상 실시 근거 마련 조항은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고 봐서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신설하더라도 부작용 등이나 별다른 문제는 없기 때문에 법률로 강조하고자 하는 의지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윤후덕 의원안은 무상협력의 범위에 해외긴급구호가 포함되도록 하는 것으로 국제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이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협력 정의에 해외재난 피해국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긴급구호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두 개념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개정안은 해외긴급구호 정의에 해외재난 피해의 예방을 추가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1쪽입니다.

최보윤 의원, 서미화 의원 발의안은 두 가지 내용으로 23쪽의 조문대비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 분야의 전문가 포함 문제는 전문가 위촉에 유연성이 저하될 수 있는 점과 여성·아동·장애인 및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를 여성·아동·장애인 및 청소년의 인권 분야 전문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5쪽,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주요 사항에 체결·공포된 조약을 국제개발협력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정책의 기본방향, 환경 분석, 규모 및 운용계획 등 현행 종합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들과 성격이 다소 상이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다음은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칠승 의원님 개정법률안 중에서 기본정신에 인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권 존중 원칙을 더욱 명확히 하려는 그런 입법 취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개정안 내용 중에서 세계인권선언 및 우리 정부가 비준한 주요 인권조약을 추가하는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주권적 권리 등 해당 국가의 다양한 국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안에 인도주의, 인권과 같은 국제사회의 공동 가치를 포괄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 유엔의 제반 원칙을 기본원칙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민형배 의원님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하고 타 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그런 입법 취지에 공감을 하고 따라서 현행 규정의 취지도 함께 고려한 수석전문위원의 대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또 국제개발협력의 날 지정과 유공자 대상 포상 근거를 마련해서 국민의 인식과 관심을 높이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도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

전자정보시스템의 업무 일부 위탁은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나 활용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개정안 중에서 ODA 사업의 연계와 조정, 평가 업무를 외부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우려가 있습니다. ODA 사업의 조정은 현행법에 명시된 대로 주관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핵심 업무입니다. 수원국의 수요 및 상황, 외교 정책 및 관계 같은 그런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이것을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ODA 사업 평가와 관련해서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현행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미 평가전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 중입니다. 연구기관에 이것을 위탁해서 할 그런 타당성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개정 관련해서 기본법상 규정이 없이도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별도 조항 신설이 불요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그대로 존치를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윤후덕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법률안은 양자 간 개발협력 중에서 무상협력의 범주에 포함되는 긴급재난구호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로

적시를 해서 양쪽 법안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갑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상 해외긴급구호는 재난 발생 시에 긴급구호대 파견과 같이 그런 절차적인 문제, 특정 긴급구호 활동에 국한이 되므로 이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그런 단기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의 긴급재난구호를 포함하는 무상협력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과 명시적으로 연계를 하면 무상협력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장기적인 개발협력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 절차하고 단기적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상 절차 간에 또 충돌할 가능성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외교부로서는 현행법을 유지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최보윤 의원님과 서미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는 아까 검토보고 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 같은 그런 특정 분야 전문가를 법적으로 규정을 하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립할 수 있는 그런 현재 체계의 유연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이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에 학계 분야별 전문가,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가 민간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여성이나 청년을 대표하는 위원들도 위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기본계획에 현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의 적용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기본계획에 조약의 적용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게 되면 해외에서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할 때 법적 권리 의무를 창설할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러한 내용을 조문화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할지에 대한 그런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 제안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러면 의견 있는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 제가 발의한 거는, 외교부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요한 위원 제가 KOICA 자문을 20년 이상 했고 그다음에 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으로 3년 직접 운용해 봤는데 그냥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 안에서 공모를 하고 이런 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까다롭고.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혹시, 정부에서의 우려하는 것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더 관료적으로 뷔라크러시(bureaucracy)를 만들어 버리면 더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저희들이 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을 운영하면서 정부들의 룰을 지키느라고 굉장히 속도가 느려요. 힘이 들었어요, 제가 3년 동안 다 지키고 하느라고. 그런데 거기다가 또 얹어서 만든다? 글쎄, 그게 좋을까요? 그것은 그냥 누가 발의하고 어떻게 하고 그런 걸 떠나서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수석님.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특별히 의견이 없으시면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권칠승 의원안의 인권 향상 대상 범위 확대 수용하고 기본원칙에 추가하는 부분은 빼고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수정의견대로, 국제협력의 날 지정 그리고 전자정보시스템 운영 위임·위탁 근거 마련, 포상 실시 근거 두는 것까지 정부에서도 수용했고 의견 없으시면 반영을 하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빼고 조례 제정 근거 두는 것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면 대안으로 마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조례 제정 문제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권칠승 위원** 실익은 없어 보이는 것 아닌가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이미 법이 없어도 조례를 다 만들고 있고 만들 수도 있는데 다만 개정안의 취지로 보면 법에서 이렇게 하면 조례 제정을 조금 더 진통 내지는 장려하는 그런 의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조례는 빼고 포상 실시 근거만 두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할까요?

○**김기웅 위원**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예.

○**소위원장 김건** 꼭 없어도 되는 거면 입법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그러면 다섯 가지 내용만 대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러면 권칠승 의원안, 민형배 의원안만 대안 반영 폐기되고 윤후덕 의원안과 최보윤·서미화 의원안은 계속 심사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예, 지금 정부에서 일단 유보적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위의 두 안을 기초로 위원회안을 한번 만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실…… 의결을 할 수가 있나요, 내용 정리한 대로?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소위원장 김건** 예,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권칠승 의원안, 민형배 의원안을 대안 반영 폐기하고 대안을 마련하되 기본 내용은 인권 향상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2항을 추가하고 국제개발협력의 날 지정과 전자정보시스템 운영의 위임·위탁 근거 마련 그리고 포상 실시 근거 마련하는 조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2개의 안은 계속 심사하시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차관님, 정부는 어떤……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저희 입장 다 반영된 것 같고 나머지 2개 안은 정부 입장은 현행 유지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논의 사항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은 그 취지가 반영되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을 통합 조정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제9항 및 제10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4건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자료 28쪽입니다.

먼저 김성원 의원안은 18세 미만인 사람이 친권자의 친권상실,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해 여권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정대리인 동의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0쪽에서 보시면 개정안은 단수여권 발급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제대회 참석 등 복수여권 발급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과 친권자를 법정대리인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다만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로 정리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민형배 의원안과 박용갑 의원안은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대통령들을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7쪽 표에서 보시면 논의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전직대통령 제외 규정을 신설할 것인지 여부인데 신설한다면 그 요건을 탄핵 또는 내란·외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하느냐, 전직대통령 예우 배제 대상으로 하느냐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박용갑 의원안에서 대통령 외에도 탄핵된 국무총리와 외교부장관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직대통령 외에 외교관여권 발급 제외 대상을 더 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로 박용갑 의원안의 관용여권의 경우에는 제외 대상자들이 모두 관용 발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한정애 의원안은 현행 국외 위난상황 시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예외사유로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외에 해외구호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인도적 구호 활동의 의미나 개인의 여행 자유 측면과 위난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현행법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먼저 김성원 의원님 개정안 관련해서는 예외적 여권 발급 제도는 외교부가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미 운영 중인 제도인 만큼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서 찬성을 합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처럼 개정안이 예외적 발급 사유를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해서 법정대리인 동의 주체를 친권자로만 한정하고 있지만 후견인 또한 법정대리인 동의가 가능하고 또 개정안이 단수여권 발급만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복수여권 발급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일부 문안을 수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박용갑 의원과 민형배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에 대해서는 두 법안의 구체적인 제외 대상 범위가 다소 상이하기는 한데 외교관여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탄핵된

전직 대통령 등에게는 발급하지 않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행 여권법상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 조항에 전직대통령 등이 규정돼 있긴 하지만 실제 발급 여부는 외교부장관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외교부가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도 탄핵된 국가원수 등에 대해 외교관여권을 발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 2015년, 2016년에도 이번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여권법 개정안이 3건 발의가 되었지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다소 과도한 입법이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위와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해서 명문화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보다 더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정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행 여권법상 국외 위난상황 시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예외 사유에 해외구호를 포함해서 NGO들의 인도적인 해외구호 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저희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지는 외교부로서는 천재지변·전쟁·내란 등 국외 위난상황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NGO 활동을 위한 방문을 제한함에 따라 발생하는 그런 사익의 제한과 위난상황이 발생한 지역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라는 공익을 비교형량했을 때 우리 국민을 보호할 법익이 더 크고 중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구호라는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어떠한 법령에도 그 법적 정의가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해석에 있어서도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해외구호에 NGO의 활동만이 포함되는 것인지 혹은 개인의 활동도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고 NGO의 활동만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NGO가 그 형태와 목적에 따라서 법적 성격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NGO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외구호를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 등 현행 여권법령상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사유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그런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2008년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의견을 판시한 바가 있는데 현행법상 규정돼 있는 예외 사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나 국가의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임에 반해서 NGO나 개인의 해외구호 활동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위험을 담보하면서까지 보호되어야 할 중대한 국가적 이익에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그런 현재의 판시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여권 사용 허가를 NGO들한테 허용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경호·경비 대책과 유사시 대피·탈출 방안 같은 충분한 안전 대책이 필요한데 천재지변이나 전쟁·내란 등의 해외 위난상황에서 NGO나 개인이 충분한 안전 대책과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말씀 드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교부로서는 해외구호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사유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건** 위원님들의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김준형 위원님.

○**김준형 위원** 저 일단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소위 말하는 런종섭 방지법이 오히려 그것보다 더 강화하자는 논의는 있었어도, 법무부에서 출입국 금지를 했는데 임명하는 그사이에 소통이 없어서 보낼 경우에, 사실상 출입국 금지된 사람들을 대사로 파견하고 공관장으로 파견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왜 갑자기 여기서 빠졌는지, 단순한 누락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 올릴 때 저는 교섭단체가 아니니까 문제 제기를 못 했는데 보니까 오늘 빠져 있거든요. 그걸 꽤 컨센서스를 이뤘던 것 같은데 왜 빠졌습니까?

○**소위원장 김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오늘 상정되지 않은 안건이 상정 안 된 이유를……

○**김준형 위원** 왜 상정이 안 됐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거의 합의에 가깝게……

○**김기웅 위원** 제 것도 보니까 저번에 올라왔다가…… 왜 한 번 올라왔던 것 있잖아요? 상정하는 걸 물어봤더니 한 번 상정된 것 빼고 이번에 상정한 건 상정 안 됐던 것들을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미상정 안건부터 먼저 올린답니다. 그러니까 올라왔던 건 나중에, 뒤로 밀려간 거지요, 계속 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번에 했던 걸 계속 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안건 올라왔던 것은 빼고 미상정 안건 우선으로 여야 간사가 하신다 해서……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면 제 게 없어서 물어봤더니, 저번에 제 게 있었는데 토의도 안 했는데 어디 갔느냐 했더니 그렇게 하신다네요. 그래서 하여간……

○**김준형 위원** 그게 합의의 편의상 그럽니까? 왜 그런 것이지요?

○**김기웅 위원** 그렇게 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위원장 김건** 제가 이해한 바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안건이 많이 밀려 있어서 그래도 한 번 올라왔던 안건 빼고 다루지 못했던 안건을 죽, 그다음 것 하고 그다음 것하면서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게. 좀 시간이……

○**이용선 위원** 계속 심사가 뒤로 밀렸구먼. 그 이야기인가요?

○**소위원장 김건** 예, 그렇지요.

○**김기웅 위원** 나중에 한다는 거지요. 한 번도 못 올라온 게 많다 이거지요.

○**소위원장 김건** 한 번 상정이 됐던 안건은 뒤로 다시 가는 것 같습니다, 순서가.

○**김준형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민감한 걸 뒤로 미루는 건 알겠는데 합의가 거의 됐던 것들은 빨리 처리하고 가는 게 낫지 않나, 상식적으로는 그래요.

○**김기웅 위원** 여야 간사님이……

○**소위원장 김건** 예, 확인해 가지고……

○**권칠승 위원** 이것 여권발급에 있어 가지고 후견인 동의까지 포함하자 이런 의견이신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예.

○**권칠승 위원** 그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18세 미만이 친권자나 이런 동의를 못 구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외교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소정의 어떤 증빙자료를 보고 판단해서 냈었는데요.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정확하게 설명을……

○외교부여권과장 정재훈 저희 여권발급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발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행방불명이 됐거나 단독 친권자가 사망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증빙서류를 증거로 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면 그때도 후견인이 있으면 후견인 동의를 받아서 발급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외교부여권과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에 나오는 것하고 거의 유사한 방식인가요?

○외교부여권과장 정재훈 예, 그것은 저희가 규정이 없었는데, 지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입법화하는 겁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면 그때 복수여권도 발급을 하셨나요, 지침상?

○외교부여권과장 정재훈 예, 발급했습니다.

○권칠승 위원 아, 그러면 그 내용을 법으로 규정한다 이런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외교부여권과장 정재훈 예.

○권칠승 위원 그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권 업무를 몰라서 그러는데 한정애 의원님 대표발의한 것, 지금 여권의 예외적 사용 허가라고 하는 게 출국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NGO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권발급이 제한된 지역에 갈 경우에 예외적으로 여권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출국하기 위해서.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출국은 시켜 준다 이걸로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외국으로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는 NGO가 외국에서 외국으로 갈 경우에?

○권칠승 위원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그런데 이게 출국을 금지한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금지구역에서 여권을 사용하거나 거기에 체류하면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경우 그런 케이스기 때문에 외국에서 외국으로 가도 그 제재 케이스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여권으로 가면.

○권칠승 위원 그걸 어떻게 제재하지요? 제가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인요한 위원 찍히니까요, 여권에 찍히니까.

○김준형 위원 안 찍는 나라도 있습니다.

○외교부영사안전정책과장 유병석 영사안전국심의관입니다.

저희가 출국을 제한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여권법령상 보면 ‘여권의 사용제한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등’이 붙냐하면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방문·체류도 제한을 금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국을 제한한다는 표현이 약간 실질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면 제가 더더욱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제가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지금 여행금지국에 가서 무슨 구호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내 주자, 저는 이런 취지로 이 법을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되나요?

○**외교부영사안전정책과장 유병석** 그게 한국에서 가든 외국에서 가든 여행금지된 지역이나 국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권칠승 위원** 누가 못 들어가게 하지요? 외국에서 가는 것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못 들어가게……

○**외교부영사안전정책과장 유병석** 아, 외국인이요?

○**권칠승 위원** 아니요, 외국에 있는 한국인이. 그 나라는 이 나라가 여행금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사전적으로 금지를 못 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제재 규정이 있습니다.

○**외교부영사안전정책과장 유병석** 사후적으로 제재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인요한 위원** 사전적으로는 못 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그런데 해외구호 같은 경우에는 사전 허가 없이도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 법안 취지입니다.

○**인요한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트럼프 정권 때 웨비어 사건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웨비어 사건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지금 북쪽으로 못 가요. 여권을 따로 내야 돼요, 특별히 허락을 받고. 새로운 사업 하는 사람은 거의 99% 아예 못 가요.

그런데 유엔의 근본적인 차터(charter)에서는 NGO가 하는 일은 정치와 구호 사업은 섞지 말라, 반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유엔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각 나라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대립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적어 왔는데 북한, 이란, 소말리아, 리비아, 수단 이런 나라들은 한국에서도 아마 규제가 있나 보지요, 다는 아니겠지만?

○**외교부영사안전정책과장 유병석** 예, 여행금지국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요한 위원** 그래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지금 옆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나라는 갔다 온 줄도 몰라요. 북을 수도 없이 갔는데 여권에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 사증을 넣었다 빼 가요, 자기네가. 그래서 그런 나라도 있고. 그래서 몰래 가는 것, 그런데 아마 가서 사고가 나면……

그다음에 제가 북한 편, 북쪽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오늘 이것 폭발적인 얘기인데요 북한에 가서 감금된 미국 사람들이 전부 다 현행법을 어겼습니다. 현행법을 어기지 않고 감옥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화소나 어디 간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외교부나 출입국에서 걱정하는 것은 책임감 때문에, 위험한 데 들어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엄청나게, ‘뭐 하고 있나. 대한민국 국민이 당했는데 왜 그것을 허용했느냐’ 하는 이런 취지에서 그런 것 같은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도적인 지원에서는 한 의원께서 발의한 것이 맞아요. 그러나

또 책임지는 면에서는…… 그런데 인도적인 지원으로 간다고 그리고 다 같지 모르잖아요, 또 그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핑계로 잡아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부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아까 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NGO가 마음먹고 정부한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외국에 갔다가 돌아오면 저희 정부로서는 알 방법도 없고 제재할 방법도 없지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 거기에 가서 위난이나 그런 상황에 처해서 긴급하게 구조되어야 될 상황이라든가 혹시 거기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한 의원님 발의 취지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고 하지만 NGO들도 정부가 허가해 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는 NGO들이 많지 않은 것 이지요. 하지만 이것을 입법화해서 그 카테고리 안에 넣어 주면 거의 모든 NGO들이, 개인이든 어떤 형태의 NGO들이든 요구가 폭발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럴 경우에 그 분들의 안전을 다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게 저희 정부의 입장입니다.

○**권칠승 위원** 그리고 ‘여권의 사용 제한’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출국 금지가 아니라는 건가요? 그러면 해당 국가에 가서 여권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제한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그러니까 여행금지국인 경우에 한국 여권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서 한국 여권을 사용하게 해 준다고 정부가 합법적으로 허가를 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김준형 위원** 그게 예외적 사유니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출국도 안 되고 입국도 안 되고 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사용 허가 없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경우에도 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외교부에서 허가를 해 줘야 해외긴급구호도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되는데 문제는 외교부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법으로 들어가 있으면 허가 요청이 굉장히 쇄도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용선 위원** 이게 결국은 내전이든 분쟁이 발생한 국가에 인도주의 운동하는 단체들이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방문하고자 할 때 어쨌든 우리 정부는 분쟁이 발생하면 교민들, 국민들의 안전 때문에 입국이라든지 체류를 제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정말 특별한 경우는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승인 대상에 인도주의 활동 부문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빠져 있어서 예외적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열어 달라는 게 법안 개정의 취지이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예, 맞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제3국을 통해서, 한국 여권은 웬만하면 비자 없이 가는 데가 아주 많고…… 특히 분쟁 대상 지역이 제3세계가 많잖아요, 아프리카.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실제 방문을 위해서 비자를 별도로 받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제3국을 통해서 가게 되면 사실 방문 자체에 문제는 없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제재나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자료 43쪽에 보시면 행정제재와 또 형벌 조항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현행법 체계에서는 긴급구호로 위난 지역에 가는 것은 무조건 다 제재 대상이고 불법적인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개정안 취지는 허가를 받아서 그래도 합법적으로 활동을 하게 해 주자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면 불법적 활동이라는 거네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그렇지요, 지금 하는 것은.

○이용선 위원 그러네, 불법적 활동이네.

○권칠승 위원 불법 활동에 대한 제재가 없어요?

○외교부영사안전정책과장 유병석 있습니다.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용선 위원 있네. 세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그러니까 그 제재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까지 부여가 가능합니다.

○권칠승 위원 아, 그걸로 되어 있네.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제재가 있습니다.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출국을 제한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제재가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그러니까 사실 출국을 제한……

○권칠승 위원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어떤 것을 하지요? 외국에 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그래서 출국 제한 외에는 사전적으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사후적 제재를 하는……

○인요한 위원 들어와서 발각되면 무슨 폐널티가 일어나나요?

○김기웅 위원 아까 벌칙 얘기했잖아요.

○인요한 위원 벌칙이 뭐예요?

○이용선 위원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세네.

○소위원장 김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지금은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NGO들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 정부가 허용하지 않는 지역은 가지 않으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입법화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 정도로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의 책무를 다할 수 없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가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용선 위원 이 법 조항이 2007년 아프가니스탄의 분당 샘물교회 참수 사건 이후로 개정이 이루어진 건가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예, 처벌 규정이 그때 만들어졌고……

○이용선 위원 아, 그때. 그러니까 이게 참혹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이 처벌 규정이 강화된 거네.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거기에 앞서서 2004년 김선일 사건 때 이미……

○이용선 위원 김선일도 있었지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예, 그때.

○이용선 위원 참 딜레마네.

○김준형 위원 나온 김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예외적 여권 사용이 1년에 얼마나 되나요?

○외교부영사안전정책과장 유병석 법안소위 심사자료에 참고로 붙여 있습니다만, 최근 5년간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현황이 있는데요. 2024년의 경우에는 총……

○김준형 위원 몇 페이지인가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47쪽입니다.

○김준형 위원 47쪽이요?

○외교부영사안전정책과장 유병석 47쪽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2024년의 경우 기업 활동이 4639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나머지는 공무 344건, 기타 184건 그다음에 영주, 취재·보도, 인도적 사유 이런 순위였습니다.

○김준형 위원 그런데 법안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워낙에 상임위가 안 열려 가지고 묻고 싶은데, 제가 이게 다른 식으로, 공무의 경우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소수지만 군인들이 들어간 것에 대한 예외적 사용 허가 건수를, 내역을 밝히라는 데 외교부는 이게 비밀도 아닌데도 저한테 한 번도 제출을 안 했고요. 제가 따로 파악한 경우에는 127건이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공무로 들어가서.

그런데 이 내역을 안 밝히는 이유가 뭐예요, 비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교부영사안전정책과장 유병석 이 부분은 제가 최근에 이쪽으로 옮겨서 한번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예외 사유의 항목을 좀 늘리자라는 게 법 개정 취지인데, 그중에 그야말로 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예외 사유로 넣어 달라 하는 것이 개정의 기본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분쟁이나 이런 상태의 심도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무조건 열어라가 아니라 예외 사유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때그때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을 수용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소극적으로 이 개정 사유를 해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즉 자동으로 여는 게 아니라 예외 사유 범위의 확장, 사실 국익에 따라서 예외 사유가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건데 그중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 활동이라든지 이 영역도 포함시키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소극적인 입장을 가질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지금도 예외적 여권 사용 사유에 네 가지가 명시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다 열어놓은 게 아니라 그런 사유로 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심사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용선 위원 그러니까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구호라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NGO의 정의, 어떤 NGO가 가능하고, 개인은 다 가능하지 않느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누구한테는 허용하고 누구한테 허용하지 않는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많은 사안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를 들면 사업, 기업을 위해서 나간다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제한적으로 했거든요. 만약 이렇게 해서 NGO들이 대거, 특히 종교적인 이념을 갖고 가시는 분들도 NGO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서 분쟁 지역, 특히 그런 위험한 지역에 많이 나가게 되시는 경우 나중에 거기서 상황이 굉장히 악화됐을 경우에 그분들에 대한 안전을 정부가 책임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저희가 지금 완전히 안 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를 더 신중하게 서로 검토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용선 위원** 그런 취지는 좋고요. 특히 종교 쪽의 선교 활동하고는 영역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 문제는 선진국 일반은 대체로 예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잘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을 발의한 한정애 의원실 쪽하고도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예,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위원장님, 참고로 다음 주에 한정애 의원실에서 이 주제로 정책 간담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 소위에서 조금 더 풍부한 논의 자료가 준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요한 위원** 저희 가족하고 가까운 사람이 샘물교회 사건에 연루됐는데 사실 국정원에서 많은 돈을 써서 뭐랄까요, 납치비를 지불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들을 다.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 쪽에서도 피해가, 그때 트라우마가 좀 있어서 이것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권칠승 위원** 여기 법 17조에 나오는 ‘긴급한 인도적 사유’라는 게 인도적 구호하고는 다른 내용으로 해석을 하시네요, 다르게?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그것은 인도적 사유지요, 인도 지원이 아니라.

○**권칠승 위원** 그러네요.

여기 여권법 시행령에도 보니까 재량권을 거의 안 주네요. 재량권이 거의 없네요. 법에 정해져 있는 틀을 완전히 벗어나기 힘들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김기웅 위원님.

○**김기웅 위원** 이용선 위원님 말씀도 동의하고요.

제가, 여기 지금 나온 얘기 중에 하나 고려할 게, 저희도 북한 갈 때 승인을 받고 가라고 하는데 안 받고 갔다 오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경우에 해 주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경우도 허가하든 안 하든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불법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우리 대사관이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합법적이면 자기가 가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고 미국대사관에

뛰어들어갈 수도 있고 경찰한테도 얘기하기 좋은데 불법이면 드러났을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불법으로 된 경우에는 오히려 활동도 훨씬 위축되고 제대로 못 하는 테다 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합법화해 주는 것이 우리 국민 보호에는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 이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걱정하는 것은 저도 그렇지만 이것을 넣었다가 마구 몰려오거나 혹은 제일 큰 문제가 갔는데 결과적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외교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다수가 ‘정부 뭐 했냐, 그 위험한 데 왜 우리 국민들을 가게 만들었냐, 다 막아야지’라는 또 엄청난 비판 여론이 나오고 그것을 다 일일이 해외 통제도 못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처 입장에서는 행정 양도 엄청나게 폭주할 거고 그분들 일일이 다 선별하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고 가면 사고 날 가능성 더욱더 늘어나는 것이고 하니까 좀 피하고 싶은 것은 이해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오늘 이것은 안 하는 것은 맞는데 한 가지 측면이 아까처럼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게 하나, 재량행위잖아요. 그래서 넓게 심사하자는 말씀도 제가 볼 때는 틀린 것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왕 이분이 꼭 가실 것 같다면, 심사를 해 봤는데 이것은 못 가게 해도 무조건 갈 사람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아예 합법화시켜 주는 게 오히려 보호에 도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면…… 범위는 넓혀 주고 심사하는데, 가급적 못 가게 하는데 이 사람은 못 가게 하더라도 갈 사람이다 싶은 사람은 아예 합법적으로 갈 수 있게 해 주는 게 국민 보호에서는 오히려 플러스일 수 있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오늘 뭐 의견입니다, 의견이고.

하나 궁금한 것은 아까 앞의 부분 후견인 관련해서 지금 검토의견이 여기 있는데…… 원래 것도 ‘법정대리인’ 되어 있는데 민법에 보면요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후견인을 두는데 후견인의 권리가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재산상의 처분 등에 대해서 권한을 갖는 게 후견인이거든요. 이 사람의 여권 발급은 이게 과연, 친권자는 물론 당연히 여권 발급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고 동의를 할 수 있지만 후견인이……

원래는 법이 그렇더라고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라. 원래 법에는 법정대리인이라는 개념으로 들어와 있는데 법을 발의하신 분이, 개정안 내신 분이 이것을 몰라서 ‘법정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친권자’를 썼나 생각해 봤더니 그게 아니라 후견인…… 지금도 후견인이 없을 때는 데리고 양육한 사람 확인만 받아서 여권 발급해 준다 하는데, 쓴 이유가 후견인에게까지 동의 여부 필요 없이 친권자 없으면 그냥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후견인이 과연 그 권리까지 있느냐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실제로 후견인이 신분상의 신분증 같은 건데 그것에 대해서 후견인이 동의를 할 권리가 있나요? 권리가 있나?

○**외교부여권과장 정재훈** 제가 알고 있기도는 친권의 범위는 포괄적인데 말씀하신 대로 후견인의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재산상에 관한 부분이 있고요, 법적인 것 동의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도 법상으로 동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러면 더 의견이 없으시면 정리를, 11항은 수정해서 가면 되고 나머지 세 안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그러면 여권법 안에 대해서는 김성원 의원안을 수정 의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민형배·박용갑 의원안과 한정애 의원안은 계속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위원장님, 그리고 아까 한미동맹 결의안 조금 섞어서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보고를 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이용선 위원** 그건 통일부까지 끝내 놓고 하지요.

○**권칠승 위원** 그 부분은 쉬는 시간에 따로 한번 상의를 하시지요.

○**김준형 위원** 쉬는 시간에 한번 살펴보세요.

○**소위원장 김건** 예, 일단 나눠 드리고 쉬는 시간에 좀 살펴보시게 하고.

그다음에 외교부 것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님도 이것 일정 정할 때 같이 참여하시는 거지요, 양당 간사실하고?

○**행정실장 김형진** 다시 행정실하고……

○**소위원장 김건** 행정실하고 같이하는 거지요?

○**행정실장 김형진** 예.

○**소위원장 김건** 그래서 김기웅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아예 논의가 안 된 것은 상정이 됐다 하더라도 빼지 말고 다시 올려서, 그러니까 상정이 됐지만 논의를 안 하면 심사가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권칠승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용선 위원** 많이 좁혀졌던 안.

○**김준형 위원** 예, 좁혀졌던 안 위주로.

○**소위원장 김건** 그러니까 상정이 됐는데 아예 심사가 없었다 그러면 그것은 지나갔더라도 그다음에 다시 올려서…… 오늘도 그러니까 15항 이하는 다음에 할 때 우선적으로 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15항 이하는 검토를 전혀 안 했으니까 그렇게 행정실에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준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까지 논의된 것 중에 아주 좁혀져서 이번에 조금만 더 논의하면 합의될 것 같은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옮겨 주시고 그렇게, 할 때 행정실에서 같이 논의해서 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외교부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외동포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0.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4)

31.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5)

32.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2)

(16시03분)

○**소위원장 김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3건의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변천환 재외동포청 차장님께서 출석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3건의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관련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재외동포청 법안심사 소위원회 마지막 4번입니다, 외교부 소관 4번.

그러니까 1번·2번까지 보셨고 3번은 건너뛰고 4번 가겠습니다.

먼저 김건 의원안은 세 가지 내용으로 첫째, 재외동포정책의 범위에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정착 지원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둘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의 제출 방식을 변경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는 대신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고 재외동포청장이 이를 종합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2쪽입니다.

세 번째로 ‘재외동포협력센터’의 명칭을 ‘동포교류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사업 범위 중 재외동포 대상 홍보사업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유사 명칭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고 국내외 재외동포 홍보사업과 중복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쪽 김기현 의원안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정착 지원과 해외재난에 처한 재외동포에 대한 긴급지원을 지원정책에 포함시키고 자체평가 결과의 제출 방식을 변경하며,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목적을 조정하여 업무 범위를 재외동포청의 정책 수행에 대한 지원으로 축소하는 한편 재외동포 관련 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인데, 11쪽에서 보시면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서의 정착뿐만 아니라 지위 향상까지 포함하고 있어 김건 의원안과 같이 새로운 목을 신설하는 방식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 12쪽 해외재난에 처한 재외동포에 대한 긴급지원사업은 현재도 추진하고 있기는 하나 외교적 측면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3쪽, 자체평가 결과의 제출 방식 변경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체계·자구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23쪽 수정의견 표에 조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업무 범위를 재외동포청의 정책 수행에 대한 지원으로 축소하는 것은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목적과 업무 범위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이라고 보입니다.

15쪽, 재외동포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국고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이며, 뒤에 나오는 이용선 의원안과 같이 보조금의 지급 대상을 해외 소재 재외동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26쪽에 제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이용선 의원안은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김기현 의원안과 같이 국고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점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을 종합하여 21쪽부터 통합 조문대비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러면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입니다.

그간 재외동포정책 추진 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적·제도적 정비가 요구되었던 상황에서 재외동포정책 추진 체계의 강화를 위해 김건·김기현·이용선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정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김기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에 따라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을 재외동포정책의 범위에 포함한다면 현재 동포청에서 수행 중인 국내정책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더욱 탄탄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김건·김기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개정안과 같이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의 자체평가를 재외동포청이 종합한다면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류 체계가 더욱 강화되리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김건·김기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에 따른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협력 센터의 명칭 변경 및 수행기능 조정과 협력센터의 설립 목적 변경도 수용 가능한 입장입니다.

또한 김기현·이용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에 따른 재외동포단체 지원에 대한 국고보조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해외 소재 재외동포단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통합관리망 사용이 기술적으로 제한되는바 별도의 관리망을 통해 보조금 집행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개정안 중 해외재난에 처한 재외동포에 대한 긴급구호에 대한 정책을 재외동포정책에 포함시키는 것은 재외국민 보호 기능과의 중복 가능성, 외국 국적 동포 지원 시 외교적 마찰 가능성 그리고 내국민 재난피해 지원과의 형평성 논란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관계 부처 의견 등을 감안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종합적 의견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 위원** 간단한데요, 아까 외교적 마찰도 얘기하셨는데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해당국…… 국적은 우리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외국 국적을 갖고 있을 경우에 거기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중복 지원은 어떻게, 중복 지원될 경우를 어떻게 밝혀낼 방법이나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해외위난 재외동포들을 지원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 지원상 세운 원칙은 첫 번째 자력구제, 두 번째 거주국에서의 지원이 불충분한 경우, 세 번째 개인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사회에서 그런 불충분한 상황을 고려해서 지원을 요청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거주국에서의 지원이 일차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김준형 위원**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건가요?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예.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저희 재외공관 통해서 파악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지금도 사실은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내부지침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 현금이 아닌 물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것이 법적으로 명시화될 경우에 외국 정부하고의 마찰 가능성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금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국내에 재외동포들이 지금 대거 들어오고 있고 더 들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동포청 사업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재외동포를 대상화하는 그것은, 지금 사업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런 점에서 법적 근거를 갖는 것은 타당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재외동포센터인가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재외동포협력센터입니다.

○**이용선 위원** 재외동포협력센터 명칭 개정과 관련되어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저도 상당히 합당하다고 보는데 두 분 개정 대안이 같은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명칭에 대해서는 김건 의원안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김기현 의원안은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예, 김기현 의원안은 목적 조정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용선 위원** 명칭 개정은 없고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예. 협력센터가 워낙 비슷한 이름이 많고 그래서 동포교류진흥원으로 할 경우에 조금 더 공적인 느낌이 많아서 아마 동포교류진흥원으로 제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용선 위원** 청하고 관계가 어떨지 좀 궁금한데.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지금 저희 동포청 소속으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가 광화문에 있습니다. 거기도 센터이기 때문에 장이 센터장이고요. 그다음에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청소년 모국 연수 등 초청 연수를 해서 동포들이 한국 방문해서 여러 가지 교류를 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센터, 센터 하니까 교민들이 많이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 모국 초청 연수 또 교민들, 우리 동포들 초청 연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교류 그래서 동포교류진흥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에 더 합당한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동포청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하고도 공감대를 이룬 그런 명칭입니다.

○이용선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또 의견 말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위원장님, 잠깐 정리드리면 지금 재외동포 대한민국 정착지원은 정부 측 다 수용이 됐고, 자체평가 결과 제출 방식 변경하는 부분은 수정의견 드렸고요. 재외동포협력센터 명칭 변경 수용하고, 홍보사업 제외하는 것 수용하고 또 정책사업의 국고지원은 김기현 의원안과 이용선 의원안을 반영해서 수정의견 하고, 해외재난 재외동포 긴급지원은 반영하지 않고요.

지금 한 가지가, 14쪽인데요. 협력센터의 목적을 재외동포청의 정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범위를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공공기관 자율성 차원에서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고 재외동포청은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 주시면 대안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권칠승 위원 그러면 목적에 비해서는 엄청 줄어드네요, 기존 법에 비해서.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예, 강화를 위한 지원이 아니라 강화를 위한 재외동포청의 정책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소위원장 김건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재외동포청 산하기관 아닌가요?

○이용선 위원 산하기관은 맞지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그래서 어차피 관리 감독 관계에 있기는 한데 정책 수행을 지원한다고 하면 일단 재외동포청의 정책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정책 수행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폭이 좁아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신중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정책을 세우기도 하고 정책을 기획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인요한 위원 발의한 의원님께서 추가 설명 한번 해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김기현 의원님 발의안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아니, 제가 발의한……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김기현 의원님.

○이용선 위원 김건 의원님 아닌가요?

○소위원장 김건 김기현 의원님안.

○이용선 위원 김기현 의원님 발의인가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예, 김건 의원님 안의 홍보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나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권칠승 위원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의견이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재외동포청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별 의견 표명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러니까 제가 한 이름 변경은 수용이 됐고, 그게 아니라 김기현 의원님이 한 목적 부분 바꾸는 것……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예, 자료 14쪽입니다.

○**이용선 위원** 명칭은 동포교류진흥원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이름으로, 중복성도 있습니다만 그 명칭 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명칭으로 진일보했는데 그런데 정의에 관련되어서는 너무 좁아지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손을 보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 센터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여기에 해당되는 기관인가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예, 공공기관입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정기관에 있는 센터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예, 부처의 산하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름도 진흥원으로 좀 더 공공기관스러운 이름으로 바꾸는……

○**권칠승 위원** 굳이 이렇게 좁혀서 할 필요 없겠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행으로 이렇게 꼭 기능을 좁힐 필요까지 있나 싶은데요.

○**이용선 위원** 전문위원께서 좀 좋은 안을……

○**소위원장 김건**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한 감으로는 재외동포협력센터가 별로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바꿔 온 것 아닌가요, 솔직히 얘기해서?

○**권칠승 위원** 그것을 그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시다니.

(웃음소리)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참고로 저희 재외동포청으로서는 김기현 의원님 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국회에서 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래서 뭔가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지금 이 워딩이 아니더라도 조금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동포청의 산하기관이니까 유기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표현 같은 게 뭐가 있었으면 좋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권칠승 위원** 두 기관이 많이 불편한가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권칠승 위원** 아니, 있는 대로 이야기하십시오.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아닙니다.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아주 협력 잘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이용선 위원** 이게 홍보 같은 유사 기능의 조정은 동의가 있다면 좋고요. 그렇지만 목적과 관련된 것은 현행 규정을 준용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요한 위원** 오케이.

○**권칠승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재외동포청에서 해외위난 동포 긴급지원정책을 명시하는 것은 외교적 마찰이 있다는 건데 이게 외국에 가서, 본국에서 무슨 행위를 하는 게 마찰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이미 하고는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고 많은 사업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권칠승 위원** 1억, 그렇지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외, 예를 들어서 LA 산불 같은 경우에 났을 때 일부 우리 교민들의 피해가 있으면 저희들이 현금은 아니고 물품으로, 공관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법률이 아니고 저희들 내부 지침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법률로 명시할 경우에는 조금……

○**권칠승 위원**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이런 뜻이네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굳이 필요가……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예, 외교적 마찰……

○**소위원장 김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해 봤는데, 원래 11조 있지 않습니까. 11조를 ‘국가는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산하에 재외동포……’, 아까 이름이 뭐였지요?

○**이용선 위원** 교류진흥원.

○**소위원장 김건** 그래서 ‘재외동포청 산하에’라고 딱 박아 주면 좀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산하기관 맞지 않습니까?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저희는 좋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렇게 하면 업무 범위는 출지 않더라도, 만약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서로 잘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할 수밖에 없게 해 주는 개념으로……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합의 잘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그러면 오늘 상정된 3개 안은 다 대안 반영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정착 지원, 자체평가 결과의 제출 방식 변경은 수정의견 제시했고요.

재외동포협력센터 명칭 변경 그리고 홍보사업을 제외하는 부분, 목적을 조정해서 재외동포청 산하라는 부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재외동포정책사업 국고 지원 부분은 수정의견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하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이것에 따른 부칙을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시행과 재외동포센터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을 넣어서 대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보조금 관련해서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 단체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해외 인프라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해서요. 저희 재외동포청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망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는 안을 법률에 넣으면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더 명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좋습니다.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부연 설명하면 일단 지금 기재부가 운영하는 보조금 관리망이 있는데요.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아니면 카드 사용에 관한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해외에서는 그런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해야 되고 보조금 관련 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정해야지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법에 명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것 기재부랑 협의하셨어요?

○소위원장 김건 그런데 기재부랑 협의가 된 건가요?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예, 협의됐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협의가 된 것 맞아요?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예,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렇다면 그 문안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저희가 제시하는 문안은, 법 17조 2항에 ‘해외 소재 재외동포 관련 단체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될 경우 재외동포청장은 별도의 관리망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런데 그게 법률에 들어갈 내용인가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그게 청장의 재량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시행규칙에 따르라는가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소위원장 김건 대통령령쯤에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예, 저희들 그 안도 동의합니다.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만약에 이걸 받으시는 게 어렵다고 하면 김기현 의원께서 만드신 안에 2항 있잖아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것을 해 주시면……

○소위원장 김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기재부하고 합의를 해야 그게 대통령령으로 바뀔 테니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지금 내용도 들어가고 이 부분을 넣자는……

○소위원장 김건 아니요, 지금 그 내용은 안 들어가고.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그게 안 들어가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률에 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건 예외가 안 되는 건가요?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그러니까 법률에 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 안……

○권칠승 위원 그게 몇 조에 있어요, 26조의2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요?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제17조입니다, 제17조. 김기현 의원안에 보면……

○권칠승 위원 17조요?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예, 김기현 의원님 안에……

○권칠승 위원 아니요, 보조금에 관한 법률 몇 조에 있느냐고요.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보조금 관리에 관한 것은 26조의2에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게 몇 항에 있어요?

○소위원장 김건 26조의2를 찾아서 읽어봐 주실래요?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보조금법 3조에 보면……

○소위원장 김건 3조?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예, 죄송합니다.

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해서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권칠승 위원 그러면 법에 정해야 되네요.

○김기웅 위원 그런데 여기 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그렇지요.

○소위원장 김건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면 근거가 생기는 건데.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예, 그렇습니다. 재외동포법에 대통령령으로 한다 하면……

○김기웅 위원 예외가 되는 거지.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렇지, 예외가 되는 거지요.

○김기웅 위원 굳이 다른 망을 쓴다라고 안 써도 된다 이거지.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예.

○김기웅 위원 맞아요?

○이용선 위원 맞아요? 그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예.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다른 망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고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해야지, 지금 체계에서 하위 법령에만 그냥 위임을 하면 ‘국고 보조할 수 있다’ 하고 그 사항에 대한 것만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조항에서 ‘재외동포청장이 정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정도로 하면……

○권칠승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넣으면 되지요.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소위원장 김건 오케이.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그렇게 정리하고 전체회의 전에 기재부 협의 상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수석전문위원께서 확인을 해 가지고……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예.

○소위원장 김건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2항까지는 그 취지가 반영되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0분 후에,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일단 제목을 이렇게 하지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지속발전 지지 결의안’.

○김기웅 위원 이 부분은 하여간 제 생각에는 공통적인 말로 해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으로 그냥 짧게 해도 된다, 다 빼 버리고.

○소위원장 김건 예, 그냥 짧게.

이렇게 하면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목적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냥 양쪽에……

○김기웅 위원 형용사 다 빼고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소위원장 김건 예, 다 빼고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이 어떠실까 싶은데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지금 이 수정의견은 아까 김기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김기웅 위원 그런데 제가 하여간 불러 드리면, 한번 보시면 절충안…… 절충이 아니라 이 문구에 대한, 애를 써서 만드셨는데 하여간 의견을 들어 보시고.

1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김병주 의원안이 그대로 와 있는 건데 저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대로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위성락 위원 제가 이건 짧게 짧게 코멘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예.

○위성락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1페이지에 사소하지만…… 첫 문장이 있고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그다음에 북한과 러시아가 먼저 나오는데 북한의 핵·미사일이 먼저 나오는 게 좋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래요?

○위성락 위원 그 뒤에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그다음에 ‘북한과 러시아’, 그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러면 군사적 긴장 증대는 어디로……

○위성락 위원 그러니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강화에 따른 군사적 긴장’ 그렇게.

○소위원장 김건 아, 그렇게?

○김기웅 위원 아니, 그게 거기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군사적 긴

장 중대와'.....

○**위성락 위원** 아니, ‘고도화와’.

○**김기웅 위원** ‘긴장 중대와’ 하면 안 되고?

○**위성락 위원** 그건 좋고요. 여하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먼저 나오고.....

○**김기웅 위원** 순서를 바꾸자는 거지요?

○**위성락 위원** 그다음에 북·러가 나오는 게 좋지, 우리가 러시아부터 들먹거릴 게 있느냐는 거지요. 북한부터 들먹거리는 게 맞지.

○**소위원장 김건** 그러면 제 생각에는 군사적 긴장 증대는 빼면 어떠실까요?

○**김기웅 위원** 그걸 빼도 되지요.

○**소위원장 김건** 예, 왜냐하면 북한·러시아 간 군사협력 강화가 군사적 긴장 증대로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서.

○**김기웅 위원** 그러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강화로’.....

○**소위원장 김건** 강화 등.

○**김기웅 위원** 강화 등으로.....

○**소위원장 김건** ‘강화 등은 한반도 안보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그렇게.

○**김기웅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위성락 위원** 죽 가시면 제가.....

○**김기웅 위원** 예, 1페이지 그냥 가고요.

2페이지의 수정의견 보시면 ‘1950년’ 해 가지고 이건 또 김건 의원님 것을 그대로 죽 가져왔습니다, 첫 문장이. 그렇지요?

○**소위원장 김건** 예.

○**김기웅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또 비슷한 문구가 나옵니다. 이후에 ‘한미동맹은 동북아,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밑에 보시면 똑같이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같은 말을 또 중복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을 합쳐야 될 것 같다는 거지요.

○**위성락 위원** 합칠 수 있습니다, 그건.

○**김기웅 위원** 합쳐서 어떻게 했냐 하니까 위에서부터 읽으면 죽 내려와서 네 번째 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과 법치 등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위성락 위원** 거기서 그냥 그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되나요?

○**김기웅 위원** 아니요, ‘기반으로 해서’..... 뒤 페이지에 보시면 3페이지에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었다’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3페이지의 ‘6·25 전쟁은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의’..... 앞의 ‘50년 6·25 전쟁’ 이거랑 똑같은 게 또 중복이 되고 있어서.....

○**위성락 위원** 맞습니다. 지워야 됩니다.

○**김기웅 위원** 3페이지에 있는 ‘6·25 전쟁’부터 ‘시작이었으며’를 날리고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었다’를 가져와서 ‘한미동맹은 지난 70여 년 동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과 법치 등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었다’, 같은 단어들이라서.

○**위성락 위원** 예, 동의하는데 조금 더 바꾸면 이게 인태지역 등등에 대한 한미동맹의 칸트리뷰션(contribution)이 좀 빠져야 되고요, 그러면.

○**소위원장 김건** 예, 밑에 있어서.

○**김기웅 위원** 밑에 있으니까.

○**위성락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서로 타협하면 아까 죽 읽으신 ‘1950년’ 죽 해서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까지 나오지요. 김건 의원님 안, 거기에서부터 김병주 의원님 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함은 물론 동북아,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발전하였다’로 이어 가면 됩니다.

○**김기웅 위원** 그렇지요. 그건 이어 가는 거지요.

○**위성락 위원** 예, 그렇게 이어 가고 뒤로 넘어가서는 ‘6·25 전쟁은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의 상징적 시작이었으며’는 지워 버리고 다시 또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었다’.

○**김기웅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다 합치는데요 아까 한 대로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었다’와 함께 거기에 ‘또한 한반도의…… 나아가 핵심 축으로 돼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였다’로 털어 버리는 거지요.

○**위성락 위원** 그래도 됩니다.

○**이용선 위원** ‘기반으로 기반이 되었다’는 것은 중복 표현 아니에요?

○**김기웅 위원** 다시, 어떤 거지요? 기반으로……

○**이용선 위원** ‘가치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었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김기웅 위원** 아, 그것 기반이 되는구나. ‘가치를 바탕으로 기반이 되었다’ 하든지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루는 힘이 되었다’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다 딱 잘라 버리고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발전하였다’ 그렇게 이어 붙이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김건** 제가 잘 팔로(follow)가 안 돼서……

수석전문위원님이 한번 읽어 주세요, 지금 고치신 문장 그대로.

○**김기웅 위원** 그걸 다 못 읽으실 것 같은데……

○**소위원장 김건** 아니면 김기웅 위원님이 다시 한번 죽 읽어 주십시오.

○**김기웅 위원** 할게요.

○**소위원장 김건** 예.

○**김기웅 위원** 2페이지 보면 ‘한미동맹은 지난 70여 년 동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과 법치 등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에 큰 힘이 되었다. 또한’…… 그리고 이제 ‘또한’입니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축의 하나로 발전해 왔으며 안보동맹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였다’ 해서 이게 전부 끝나는 거지요, 밑의 것은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다시 읽으면 ‘인권과 법치 등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에 큰 힘이 되었다’, 하여간 이렇게 하고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축의 하나로 발전해 왔으며 안보동맹에

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이용선 위원 그러면 좀 부드럽네.

○소위원장 김건 다시 한번 수석전문위원님이 읽어 주십시오, 정리.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불법 남침에 맞서기 위해 흘린 피와 희생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지난 70여 년 동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과 법치 등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에 큰 힘이 되었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축의 하나로 발전해 왔으며 안보동맹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였다'.

○소위원장 김건 동의…… 괜찮으신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기웅 위원 됐나요?

○소위원장 김건 예.

○김기웅 위원 그러면 다음 3페이지의 수정의견 중에…… 새로 쓰진 않고요 그 문장을 부르면요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양국이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여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그다음에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가일충 노력하며 사이버와 우주와 같은 신흥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이렇게.

○이용선 위원 그 표현이 맞겠네.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다시 읽으면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양국이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여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며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가일충 기울이며 사이버와 우주와 같은 신흥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나머지 뒤에 있는 다른 결의안 문안 자체에는 저는 의견은 없습니다. 보시고 말씀하시면 되고, 저는 앞의 서문만 문구 조정을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거지.

○소위원장 김건 그렇기는 한데 아까 원래 김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 앞에서는 '핵 없는' 이런 게 없고 뒤에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이루기 위한'……

○김기웅 위원 뒤에 있어요. 5페이지 보시면 '진정한 비핵화'는 뒤에 또 나와서 들어 있지요.

○소위원장 김건 5페이지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김기웅 위원 그것만 따로 딱 특정해서 들어가요. 그런데 원래 앞의 서문에도 이게 용어가 있었는데 김병주 의원이 했던 표현을 그렇게 바꿀 수 있겠다 하는 거지.

의견들을 내셔야지요.

○소위원장 김건 그렇게요?

○김기웅 위원 앞의 거 다 빼는 거는 이견이 있으셨잖아. 짹 빼 버리는 건 이견이 있으셨잖아요.

○이용선 위원 앞에는 그냥 '핵 없는 한반도 평화'로만 표현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결의……

○소위원장 김건 결의안 본문에 넣고요?

○이용선 위원 들어가 있으니까 본문에 들어가면 되지요.

○김기웅 위원 그렇게 하시자는 의견도 있고.

○이용선 위원 이렇게 합시다.

○위성락 위원 그게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러면 다시 한번만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읽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양국이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여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김기웅 위원 아니요, 필요 없어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이거는 빼고 그냥 ‘핵 없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사이버, 우주와 같은 신흥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김기웅 위원 만약에 그거 다 빼시면요 지금같은 표현이 이상해요. ‘평화’, ‘공고히’ 다 빼고요. 그냥 ‘한미 양국이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핵 없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며 사이버와 우주와 같은 신흥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이렇게 해 버리면 돼요.

○이용선 위원 그게 더 자연스럽네.

○김기웅 위원 그렇게 연결시키면 되지요.

○이용선 위원 ‘평화’가 두 번 들어가니까.

○김기웅 위원 그렇지요, ‘평화’ 두 번 하니까 빼고.

○이용선 위원 그거 아주 부드럽네.

○소위원장 김건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이용선 위원 나머지는 의견이 없잖아요.

○위성락 위원 그다음에 1·2·3·4로 들어가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건 예,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보시지요, 더 보시고.

○위성락 위원 잠깐만요. 이게 결국 본문의 2항하고 3항이 앞에 나온 거하고 중첩되는 데……

○김기웅 위원 그런데 앞에는 서문이고 이거는 결의문이니까.

○위성락 위원 거의 내용이……

○김기웅 위원 비슷하지요.

○위성락 위원 중첩돼요.

○소위원장 김건 정말 1항·2항은 다 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김기웅 위원 ‘경의를 표한다’하고 ‘높이 평가한다’ 이거요?

○소위원장 김건 예.

○김기웅 위원 그건 사실 없어도 되지요, 왜냐하면 앞에 표현들이 다 똑같은 게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까지만 쓰면……

○소위원장 김건 그러면 1·2항은 다 날리는 게 어떠십니까? 1·2항은 다 날리고 3항부터 그냥 1항으로 시작하는 걸로. ‘핵심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부터 시작해서……

○김기웅 위원 그렇게 5개로 해도 되겠네요.

○소위원장 김건 5개 항으로?

○김기웅 위원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용선 위원 이견 없습니다.

○김기웅 위원 대체로 된 것 같은데요.

○위성락 위원 잠깐만요. 6번에 한미 양국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얘기하는데 ‘촉구 한다’고 돼 있는데 좀 다른 표현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회가 양국 정부에다가 촉구할 것이 있느냐.

○김기웅 위원 촉구?

○위성락 위원 예.

○김기웅 위원 건의인가? 그것도 이상한가?

○소위원장 김건 그러면 결의한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어떤 표현을……

○김기웅 위원 그런데 재미있는 게 ‘노력하고 대응’이라는 말이…… 대응은 이게 좀, ‘노력하고 대응한다’, 사실 보니까 좀 그러네.

‘노력해 나간다’. ‘대응’이라는 단어는 필요 없지 않나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김건 어디?

○김기웅 위원 6번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대응해 나간다’니까, 이게 대응이라는 말은……

○소위원장 김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그럴까요?

○김기웅 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노력해 나갈 것을, 국회는 다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한미 양국이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김건 예.

○김기웅 위원 기대한다라든가.

○소위원장 김건 기대한다고 그럴까요?

○김기웅 위원 하기를 요구한다, 촉구한다, 기대한다, 바란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요. ‘촉구한다’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안 될 때 촉구하는 거라서 사실은 용어가 그렇지요?

○위성락 위원 용어로 써 놓으면 좀 의미가 달라질 거고.

○김기웅 위원 이상할 수 있겠지요.

‘바란다’ 하면 괜찮나? 순수 우리말로 할지……

○소위원장 김건 함께 나갈 것을 바란다? 확신한다고 그럴까요?

○이용선 위원 기대한다.

○김기웅 위원 기대한다, 노력해 나아가기를 바란다,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소위원장 김건 위 위원님, 제기하셨으니까 어떤 표현을 하실지……

○인요한 위원 노력해 나가는 것도 괜찮아요.

○권칠승 위원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용선 위원 노력해 나갈 것이다.

○소위원장 김건 노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이용선 위원 그렇지. 기대한다.

○김기웅 위원 지금 주어인 국회가 한미 양국에다 얘기하는 거니까.

○소위원장 김건 국회는 노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김기웅 위원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

○소위원장 김건 그렇게 하고.

○위성락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뒤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김기웅 위원 ‘완전한’ 빼자?

○위성락 위원 사실 이게 용어가 한반도의 비핵화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냐 해 가지고 논의가 벌어졌다가 다 피해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북한의 비핵화’ 아니면 ‘북핵 문제 해결’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용선 위원 ‘북한의 비핵화’ 하지요.

○소위원장 김건 ‘북한의 비핵화’로?

○김기웅 위원 ‘완전한’ 빼고?

○권칠승 위원 예.

○김기웅 위원 이 ‘국제사회의 목표’ 이게 일부러 넣으신 거지요?

○소위원장 김건 그냥 ‘국제사회의 목표인’……

○김기웅 위원 아니, 의도적으로 넣으신 것 같아요. 나는 괜찮은데……

○소위원장 김건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는 게 우리만이 아니고, 한미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모두 원하는 거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표현인데……

○김기웅 위원 좋습니다.

○이용선 위원 좋아요.

○소위원장 김건 그러면 ‘완전한’은 빼고.

○인요한 위원 다 된 거예요?

○김기웅 위원 예,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요한 위원 시간이 자꾸 가니까.

○김기웅 위원 나머지는 그냥 인사말 아닌가?

○이용선 위원 10분만 한다 해 놓고 30분 걸렸어.

○소위원장 김건 그다음에 7항.

○권칠승 위원 마지막 7번 있잖아요, 이거 약간 주어·동사가 이상하지 않나요?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고’, 주어·동사가 맞나요? 표준말 쓰는 사람들이 한번 보시지요.

(웃음소리)

○소위원장 김건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웅 위원 ‘군사적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더욱 발전’, 약간 말이 좀 그려네.

○소위원장 김건 ‘한미동맹’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미 양국이’ 그런 표현이 주어로는 맞을 것 같은데요.

○김기웅 위원 그런데 이 주어가 ‘대한민국 국회는’이지요?

○소위원장 김건 국회는.

○김기웅 위원 그다음에……

○소위원장 김건 한미 양국……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평가하면서’고 다른 주어……

○권칠승 위원 예, 그것은 끝났어요.

○김기웅 위원 ‘재미 동포 사회의 기여를 높게 평가’하는데 이 앞뒤가 잘 이어지지 않네요. 2개가 뜻이 다른 센텐스(sentence)예요.

○이용선 위원 그러네. 전혀 다르네. 전혀 다른 거를 한 문장에다 묶어놓고……

○김기웅 위원 ‘동포 사회의 기여’를 빼야 되겠다.

○위성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얘기를 다 하고 맨 마지막에 재외동포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 뒤에 다시 또 동맹이니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 경제안보 나오는 것은 좀 적절치 않고 재외동포 얘기가 나왔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살려야 된다면 앞의 어디에 갖다 붙이는 게 좋습니다.

○김기웅 위원 ‘동포 사회의…… 평가한다’가 여기 지금 한미동맹에……

○이용선 위원 그거 이상한데?

○김기웅 위원 이상하지 않나요, ‘동포 사회의 기여’가 갑자기 나오니까?

○위성락 위원 그런데 한미동맹 관계에 동포 사회의 역할이 있는 거니까 이건 있는 건 좋습니다, 이게 어디 있든지 간에.

○소위원장 김건 그러니까요. 이게 토머스 스워지가 낸 결의안에 있더라고요, 똑같이. 미 측도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 저쪽은 ‘동포 사회’가 있는데 우리는 없으면 곤란해서 균형 차원에서 일단 넣어 놨는데 어디 다른 데에 위치를 정해 주시면……

○이용선 위원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끝내야 되네요.

○김기웅 위원 이건 사실은 맨 앞에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회는…… 발전시켜 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붙여서 또 ‘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회는 이와 관련하여’……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1·2번은 삭제하기로 하셨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러니까 지금 3번이 옛날 3번. 구 3번.

○김기웅 위원 이게 ‘평가’가 다 날아가 버려서 그래요. 앞의 서문으로 가져가면 이상한 거지요.

○소위원장 김건 서문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뭐.

○김기웅 위원 서문에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수정의견 2페이지 맨 앞의 ‘50년 6·25 남침……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였다’, 그다음에 ‘이와 관련하여 한미 양국 번영의 교량 역할을 해 온 260만 재미 한인 동포 사회의 기여를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그렇지요?

○소위원장 김건 위치가 어찌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위성락 위원 어느 위치라고 그랬지요?

○김기웅 위원 2페이지.

○소위원장 김건 서문으로 옮겨서.

○김기웅 위원 서문으로 가서 2페이지에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끝났잖아요. ‘이와 관련하여 한미 양국 번영의 교량 역할을 해 온 260만 재미 한인 동포 사회의 기여를 높게 평가한다’는 그 부분이 그 뒤에 붙는다 이거지.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한미 양국의 번영과 동맹의 발전을 위한 교량 역할을 해 온 260만 재미 한인 동포 사회의 기여를 높게 평가한다’, 그것도 이상한가?

○**위성락 위원** 대체로 평가한다, 요구한다, 기대한다 그런 것들은 본문에 들어가고 전문에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본문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기웅 위원** 맨 뒤에다 넣어야 되겠네요.

○**위성락 위원** 예, 맨 뒤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건** 그러면 구 4항에 넣으시면 어떨까요, 구 4항. 지금 새로 된 2항, 구 4항.

그리니까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양국 번영의 교량 역할을 해 온 260만 재미 한인 동포 사회의 기여를 높게 평가하면서 여야를 초월하여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적극 지지할 것을 결의한다’ 이렇게 거기에 좀……

○**권칠승 위원** ‘여야를 초월하여’ 이런 말도 좀 불필요한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국회’하면 다 들어가잖아요.

○**김기웅 위원** 예, 맞아요.

○**소위원장 김건** ‘여야를 초월하여’ 빼고요.

○**이용선 위원** 갈수록 줄어드네. 빼다귀만 남네.

○**소위원장 김건** 그 위치가 안 좋으신가요?

○**위성락 위원** 4항 자체는 그거 하나로 충분히 임팩트가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동포 사회의 기여’보다는 끝의 7항에서 ‘동포 사회의 기여’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웅 위원** 맨 끝에 살려 놓는 게 좋겠다, 마지막 항에 ‘높게 평가한다’.

○**소위원장 김건** 그러면 7항으로 빼 가지고요?

○**위성락 위원** 예, 7항 뒷부분만 자르고요 그걸 ‘동포 사회’만 하나로……

○**김기웅 위원** 이것만 살려서 7항으로 하자는 거지, 맨 뒤에.

○**위성락 위원** 예, 그것만.

○**소위원장 김건** 그러니까 6항이 되는 거지요, 그게.

○**김기웅 위원** 아니요, 5항이지요, 5항. 이게 5거든.

○**소위원장 김건**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핵심가치와 함께 경제안보, 에너지’……

○**김기웅 위원** 그래서 그거 살리겠다?

○**소위원장 김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이게 있고, 마지막 문장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양국 번영의…… 높이 평가한다’로 끝내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기웅 위원** 아까 위 위원님은 이건 중복인 것 같아서 서문 거기에서 빼자고 그러셨는데 그런데 상관없어요, 살려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7을 둘로 나눠 가지고 5항·6항으로 하자는 게 지금 김건 위원장님 말씀이고 동의하시면 그냥 각각 5·6이 되는 거지요.

○**이용선 위원** 그래요. 그게 낫겠어.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나누는 데 순서는 ‘동포 사회’를 맨 뒤로 하신다는……

○**김기웅 위원** 예,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합시다.

○**위성락 위원** 자꾸 까탈 부리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소위원장 김건** 아닙니다.

○**위성락 위원** 맨 마지막에 들어갔다는 여러 가지 협력 영역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우주, 원자력 그것이 약간 중복성이 있는데 앞에 보면 구 5항에 ‘한미 간 경제통상, 투자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갖다 붙이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이 내용을요?

○**위성락 위원** 예, 살려야 된다면 트럼프 들어와서 신 영역에서 많은 협력을 기대한다는 취지에서 거기에 여러 가지 분야별 협력, 우주, 안보 이렇게 5항하고 붙여 가까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항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거기서 바로 이어 가든지.

○**소위원장 김건** 그러면 여기서 이어 가면 될 것 같은데요.

○**김기웅 위원** ‘한미 간 지속적인 협력’ 그다음에 ‘에너지, 인공지능, 우주, 원자력, 조선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 구 5항을 합쳐서 문장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야 되겠네.

○**위성락 위원** 그러든지 아니면 5·6항으로 하나씩……

○**김기웅 위원** 비슷한 내용이다……

○**소위원장 김건** 그렇게 하고 마지막 항은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양국 번영의 교량 역할을 해 온 260만 재미 한인 동포 사회의 기여를 높게 평가한다’.

○**김기웅 위원** 전체 5항이, 5개가 되네요.

수석전문위원님 정리하실 수 있을 거 같은데?

○**소위원장 김건** 수석전문위원님, 알아들으셨나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예, 지금 합치는 거로 구 5번을 ‘대한민국 국회는 동맹국인 미 합중국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대통령의 취임과 신행정부의 출범을 환영하며, 한미 간 경제통상, 투자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 에너지, 인공지능, 우주, 원자력, 조선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소위원장 김건** 아니, 여기 경제안보도 있는데? ‘경제통상, 투자 분야의’……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경제통상인데 경제안보까지 해서 할까요? ‘경제안보, 에너지, 인공지능, 우주, 원자력, 조선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김기웅 위원** ‘강화, 발전시켜 나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나요?

○**소위원장 김건** 아니, 우리가 나갈 수는 없지요. 국회가 나갈 수는 없으니까.

○**김기웅 위원**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강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정책을 지지한다’.

○**김기웅 위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권칠승 위원**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을……’ 그러면 안 되나요?

○**김기웅 위원** 주어가, 한미 양국이 우리 국회에 요구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는 ‘지지한다, 촉구한다’ 그렇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김건 위원장님의 한번 보시고.

○**이용선 위원** 취지는 그런 거니까 너무 중복이 좀 안 되도록 정리만 하면……

○**김기웅 위원** 전체를 놓고 한번 다시 봐야……

○**위성락 위원** 이 두 개를, 이거를 우리가 가져가서 합치는데 약간 중복…… ‘경제통상, 투자 분야’ 이걸 계속 하지 말고요. 이걸 뭉뚱그려서 한 문단으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웅 위원 너무 많아서?

○위성락 위원 7항 하단을 완전히 합쳐서 그냥 깔끔하게 중복 안 되는 문장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러니까 지금 구 5항하고 구 7항의 하단 부분을 합쳐서 하는데 중복이 안 되게 깔끔하게 만들어서 최종안을 만든다 그게 지금 지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구 수정은 저한테 맡겨 주시면 제가 수석전문위원하고 해서 최종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은 그 취지가 반영되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외교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홍균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통일부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3)

3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836)

3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009)

3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888)

3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182)

3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603)

3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803)

40.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0)

4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2)

42.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9)

43.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7)

4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4)

4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1)

46.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84)
47.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8)
48.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5)
49.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9)
5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6)
5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75)
5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2)
5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6)
5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6)
5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5)
5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7)
5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3)
5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2)
5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9)
6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4)
6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9)
6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2)
6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2)
6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2)
6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5)

(17시08분)

○**소위원장 김건** 의사일정 제33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65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김수경 통일부차관님께서 출석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3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사우** 전문위원입니다.

이 건은 김건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개정안입니다. 지난주 전체회의에 상정되었고 소위원회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위에 상정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납북자의 정의에 북·중 접경지역 등 남한 외의 지역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체포되어 형벌을 선고받고 억류된 사람도 납북자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납북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사정전 협정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에서 북한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행 정의 규정에서 ①과 ②를 공통으로 하고 제2조제1호의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③을 가목으로 하면서 북·중 접경지역 등 남한 외의 지역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체포되어 형벌을 선고

받고 억류된 사람을 나목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억류자의 입북 상황이 명확하지 않아 현행 법률 조문을 염격하게 해석·적용할 경우에는 납북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본인 의사의 유무 등 입북 상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억류자를 납북피해자로 결정하고 그 가족들에게 피해 위로금을 지급한 선례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향후에도 억류자를 납북자에 포함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조문 대비표로 수정의견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2조 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해당하는’을 ‘해당하게 된’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그리고 3페이지 나목에서 ‘형벌을 선고받고 억류된’을 통일부 의견을 반영해서 ‘억류된’으로 수정하는 사항 그리고 부칙 제2조로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김수경** 통일부에서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억류자는 입북상황 차이 외에 북한 정권에 의해서 자유를 박탈당한 상황이라는 것은 납북자와 유사하기 때문에 억류자를 납북자의 정의에 포함시키자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억류자 중에서는 북한 당국에 의해서 형벌을 받았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형벌을 선고받았는지의 여부를 지원 요건에 포함시키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용선 위원** 지금 통일부에서는 북한에 선교 활동을 하다가 내지는 탈북자들의 한국 행을 돋다가 또 아니면 한국에 이미 들어왔던 탈북자들이 가족들을 만나러 중국이나 제3국에 갔다가 거기서 또 억류돼서 북에 끌려간 경우도 종종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재판을 통한 형벌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북에서 형벌을 받았는지의 여부요? 그거를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용선 위원** 없습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없습니다. 지금 선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북에서 발표를 하고 기자회견도 해서 형벌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지만 또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억류된 분들이 선교사분들만 계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건 북에서 선전용으로 하는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통일부차관 김수경** 그렇지요, 북에서.

○**이용선 위원** 그거 외에 재판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방법은 사실은 없는 것이지요.

○**이용선 위원** 그리고 탈북자들이 다시 북에 억류되는 경우도 꽤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북에서 형벌을 선고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용선 위원** 그래서 ‘형벌’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억류’로 표현하면 좋겠다?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그렇습니다.

○ 이용선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김건 또 의견……

○ 권칠승 위원 어떤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북쪽 지역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100% 다 제외되는 거지요?

○ 통일부차관 김수경 입북을 어떻게 했는지보다도 북에서 어쨌든 구인을 해서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남북자와 억류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억류자를 남북자에 넣는 것이……

○ 권칠승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본의에 의해서 들어갔다가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체포·구금되는 수가 있잖아요. 현행법이든 아니든 다른 사유가 있든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 통일부차관 김수경 그 경우도 억류자에 해당돼서 그 사람을 남북자랑 같이 하자라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요? 그러면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체포되는 게 아니잖아요.

○ 통일부차관 김수경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 권칠승 위원 이 외의 지역에서 납치·체포돼야 되기 때문에 본의에 의해서 그 경계선을 넘어간 사람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 전문위원 김사우 전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1호, 이전 현행법 조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의사에 반하여’를 제일 앞부분에 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지금 해석 적용하고 있는 거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를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거주하게 된 사람으로 그렇게 해석해 가지고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거 보는 게 아니고, 김건 의원님 안을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문구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넘어갔는데도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남한지역에서 이북지역으로 넘어가게 된 사람들이이고 그 나머지 경우는 북·중 접경지역 등 남한 이외의 지역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서 납치·체포돼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의에 의해서 경계선을 넘어간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요? 케이스가 여러 개 있을 거니까 제가 한번 구분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 통일부차관 김수경 일단 본인 의사에 반해서 남한에서 북한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된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북한……

○ 권칠승 위원 그거는 가항이고요.

○ 통일부차관 김수경 그렇고, 나항 같은 경우에는 북·중 접경지역이 북한일 수도 있고 중국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남한 이외의 지역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서 납치·체포돼서 억류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 권칠승 위원 뭐가 어떻게 됐든 납치·체포돼야 되잖아요, 북한에 의해서. 그러면 본의에 의해서 넘어가는 것 100% 다 제외되는 것 맞지요?

○ 전문위원 김사우 예,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로 생각……

○ 권칠승 위원 정리를 좀 해 봐요. 그다음에 북·중 접경지역 이런 말이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요? ‘남한 이외의 지역’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물었잖아요. 100% 본의에 의해서 넘어간 사람들은 100% 다 빠진다라고 한다면 북·중 접경지역이라는 게 이게 아주 애매한 이야기가 돼요. 그렇잖아요? 북한 쪽에서 접경지역이 있고 중국 쪽에서 접경지역이 있잖아요. 북한 쪽에서 접경지역은 본의에 의해서 넘어갔다 하더라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준이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적용을 해 놓으면 구체적인 케이스가 나왔을 때 적용이 아주 이상한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갈라 줘야지요.

○전문위원 김사우 북·중 접경지역이 열거규정이 아니고 예시규정으로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등’으로 해 가지고……

○통일부차관 김수경 ‘등’이니까요 북한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쪽은 없애 버리는 게 맞는 거지요. ‘남한 이외의 지역에서’ 이렇게 하면 더 명확하잖아요. 지금 북한 경계지역 내부도 북·중 경계지역이잖아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그런데 이게 예시로 열거하면서 ‘북·중 접경지역 등’이었는데 그걸 제외하고 ‘남한 이외’로 한다고 해도 별 무방은……

○권칠승 위원 아니요, 이게 있으면 없는 거 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북한 경계선 안쪽의 접경지역을 어떻게 정리할 건데요?

○인요한 위원 위원님 말씀하는 게 훨씬 깔끔한데……

○이용선 위원 예시규정은 없애도 똑같아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그걸 없애고 그러면 ‘남한 외의 지역에서’라고 해도 그게……

○권칠승 위원 아니, 예시규정이 있으면 이게 섞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남한 이외’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권칠승 위원 ‘이외로 해도’가 아니고 그게 없애야 된다니까요.

○인요한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게 있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건데 만들 때는 생각을 해 보셨을 거잖아요, 이거 검토하실 때.

○소위원장 김건 아마 이제까지 이런 사고들이 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것 같고요. 명확함을 위해서 빼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김기웅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이걸 왜 개정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무수하게 많은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스위스에서 있다가 사실 속아서 납북된 사람도 있고, 옛날 영화배우들도 계시잖아요. 들어가서 있는 분도 있고 진짜 자의 반 타의 반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고……

만약에 이런 취지가 우리 국민인데 어디에 있었든 간에, 남한 제외하니까 더 웃기는데 우리 국민으로서 어디에 있었든 간에 북한에 의해서 속아서 갔든 강제로 갔든, 북한에 자기 의사에 반해서 가서 억류된 사람, 형벌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 사람들을 모두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취지라면.

그러면 굳이 이렇게 1항, 2항 남한 외의 지역 할 것 없이 그냥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으로 끌려 들어가서 억류된 사람 아래 버리면 모두가 포

팔되는데, 그 쉬운 한마디로 하면 될 걸 이렇게 복잡하게 아까처럼 접경지역이 나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게 이 취지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취지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디에 살고 있었든 여행 중이었던 어디에 있었든 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북한에 끌려가 억류된 사람이라면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눠서 정의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정의하는지 내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소위원장 김건** 위성락 위원님.

○**위성락 위원** 저도 비슷한 문제의식인데 여기에 보면 억류자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새로 신설하고 거기 규정을 북한에 의해 남치·체포되어 형벌을 선고받고…… 이렇게 좀 복잡하게 규정해 놨어요. 아까 누구도 제기하셨지만 ‘형벌을 선고받고’는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맞는 말인데, 좀 더 나아가서 왜 ‘남치·체포되어’도 굳이 쓸 필요가 있느냐.

생각을 해 보니까 이 법이 남북자 관련 법이어서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억류자 중에서도 남치·체포를 쓴 것 같은데 그려지 말고 편더멘털리(fundamentally) 이 법 자체의 제목을 남북피해자가 아니라 북한에 의한 억류자로 규정을 하면 자기 자의에 반해서 북한에 억류된 자, 그 사람이 남한에서 갔든 중국에서 갔든 개의치 말고 북한에 의하여 억류된, 하여튼 남치든 유인이든……

○**김기웅 위원** 속아서 갈 수도 있고?

○**위성락 위원** 속아서 갔든 하여튼 북한에 의하여 억류된 자로 제목을 바꾸고 그러면 짹 끝나는 거 아니냐, 간단하게.

○**김기웅 위원** 자기가 처음에는 자의 반 타의 반 그냥 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못 나가게 해서 잡히면 여기에 해당 안 된다 하지만 그렇게 정의하면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으로서 그냥 장소 빼 버리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북한에 억류된 자, 쉽게 얘기하면 그 말이잖아. 그걸 자세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 내 말이. 너무 포괄적인가?

○**위성락 위원** 아예 제목을 북한의 군사정전 협정에 관한 체결 이후 억류피해자의 보상·지원에 관한 법률로 해 놓고 개념 규정에다가 자기 의사에 반하여 북한 당국에 의하여 억류된 자, 그러면 다 되는 것 아니냐……

○**권칠승 위원** 북한으로 넘어갈 때 본인의 의사로 넘어간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쟁점 아닌가요? 그게 쟁점 아닌가요?

○**소위원장 김건** 예, 그게 쟁점……

○**위성락 위원** 그 부분은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갔는데 억류라는 거예요. 들어간 거는 상관이 없고요. 억류가 문제인데 억류 때부터 자기 의사가 아니면 이건 억류자예요, 북한에 들어올 때 자유인데 억류가 되었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경우도?

○**위성락 위원** 자기 의사에 반하여 억류되면 그 사람들은 피해자가 되는 거지요.

○**인요한 위원** 좋아서 간 사람은 그냥 빠지고?

○**이용선 위원** 아니, 좋아서 가든 안 가든 억류돼 있으면, 못 나오면.

○**김기웅 위원** 저 경우에 생각할 사례가 하나 있는 게 갔고 안 갔고가 아니라 실제 사례가

있는 게 개성공단의 유 모 씨처럼 사업차 때문에 올라가서 일을 하고 있다가 그냥 억류된 거잖아요, 자기 의사에 반해서. 이건 좋아서 간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쨌든 가게 됐는데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47일인가 억류가 됐는데 그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거지요, 사실은. 그러면 말씀하신 게 맞는 거고, 그런 경우는 포함하지 말고 북한의 구체적인 납치라든가 어떻게 보면 범죄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보게 된 자라고 특정하고 싶으면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포괄적으로 보고 싶으면 아까처럼 그냥 억류된 자 이렇게 해버리는 게 포괄적인 거지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게 더 맞는지……

○**소위원장 김건** 지금 김기웅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거든요. 처음에 이걸 발의할 때 뜻은 뭐냐 하면 지금 6명의 억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확실하게 넣어 주자고 만든 법인데, 6명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상당히 범위가 늘어날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제가 발의를 했으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계속 심사를 해서 다음……

○**권칠승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자의에 의해서 북한에 갔는데 거기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형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나오고 싶을 거잖아요. 의사에 반해서 억류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골치 아픈 케이스인 거지요, 이런 게.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판단이 서면 조문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성락 위원** 좋은 말씀…… 저도 그 경우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의로 갔는데 북한 법을 위반하고, 가령 살인을 저질렀다, 북한이 억류했다, 그런 다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별도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김준형 위원** 그런데 그걸 또 확실하게 여기서 100% 판단은 못 하잖아요. 그 사람이 누명을 쓴 건지 그거를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죄를 저질렀는지……

○**소위원장 김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입법정책적으로 생각할 게 너무 많아져서 처음에 이 법을 발의할 때 생각은 6명도 납치자하고 같이 보상을 좀 받을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는 뜻이었는데 제가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아니, 하기 전에 방금 대상으로 설정하는 분들은 대부분 북에 의해서 강제로 납치·체포에 해당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건** 예,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런데 아까 문제로 삼는 것은 자의로 간 경우는 전혀 성격이 다르고 자의로 갔다 하더라도, 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북한 주민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가 어려운데 자기 마음대로 들어왔다 마음대로 나가는 걸 허용할 리가 없고, 그런 사후적 상황에 따라서 억류자로 규정하고 우리가 보호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상이 아닐 것 같아서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좀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소위원장 김건**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9항까지 이상 6건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사우** 제34항 김건 의원안부터 39페이지 제39항 안상훈 의원안까지 6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건 의원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영농 정착지원 외에 영어 및 영림 정착지원도 제공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직업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고 다양한 지역과 환경에 적응할 기회도 제공할 수 있으며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및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어 및 영림 정착지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중 어업 및 임업 희망자 실태조사, 어업 및 임업에 특화된 정착지원 방안 등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북한이탈주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지역 및 대상자 선정에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12페이지, 박지원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북한이탈주민에 포함시켜 이 법에 따른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제3국 출생 자녀는 초기교육의 부족 등으로 인해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 개정된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기존 지원정책에서 제외되고 있어 제3국에서 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교육 및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제3국 출생 자녀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 북한이탈주민에 포함되도록 함에 따라 중국을 거쳐 탈북한 제3국 출생 자녀의 상당수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제3국 출생 자녀에게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정착금, 의료 혜택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출생 자녀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이러한 점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봤습니다.

20페이지, 박충권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착지원시설 보호 기간 중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 가입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할 수 있고 향후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쉬워져 노후 빈곤 문제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험료 일부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지원 수준은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26페이지, 박충권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정착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과 효율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직업훈련업무, 취업보호업무, 거주지 보호업무,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적 업무 수행을 통해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은 그 대상을 직업훈련, 취업보호, 거주지 보호, 신변보호 업무 수행에 한정하고 있는데 향후 교육 대상의 범위를 필요에 따라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함께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2페이지, 한정애 의원안입니다.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뿐만 아니라 매각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대안교육기관도 특례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탈북청소년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공유재산 대부·사용 특례의 대상인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포함시키고—지원대상 확대 내용입니다—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뿐만 아니라 매각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범위 확대 부분입니다—탈북청소년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대안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대안교육기관까지 그 대상으로 추가하고 있어 다른 기관·단체·소상공인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공유재산 특례를 운영하라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조문대비표 하단 부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정안과 같이 특례에 공유재산의 매각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보다 강력한 특례를 제공하는 것인바 다른 입법례를 고려할 때 조 제목에서 이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시행령 정비를 위해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39항 안상훈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북한이탈주민 기본교육에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대한 교육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정착지원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기본교육에 마약류 오남용

방지 교육을 포함하려는 내용으로 의료 사정이 열악한 북한에서는 마약을 상비약으로 사용할 정도로 그 접근이 쉬워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등 북한이탈주민이 취약계층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마약류 예방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한 정책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마약류 오남용 방지 교육은 기존 교육체계 내에서 이를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에 별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김수경 34번 영농에 영어·영림을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수용한다는 입장이고요. 이미 남북하나재단에서도 영농·영어·영림 지원을 모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35번 같은 경우에 북한이탈주민 정의에 제3국 출생 자녀를 포함시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무국적, 그러니까 중국 등등 해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무국적으로 들어온 제3국 출생 자녀를 만약에 정의에 포함하게 되면 탈북민과 동일한 종합적인 지원체계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적을 취득한 채로 들어오는 제3국 출생 아동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36번 탈북민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데다가 단순노무직 종사자 비율이 워낙 높아서 국민연금 가입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법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조기에 가입하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37번 통일부장관이 탈북민 보호 관련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입법 취지에 동의합니다. 현재도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법안이 마련된다면 더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번 탈북민 학교에 지자체 공유재산의 매각을 가능하게 하는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만약에 지금의 개정안대로 하게 되면 미인가 대안학교까지도 해당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북민에 대한 마약 오남용 교육을 의무화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미 저희가 마약 관련한 예방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점 그리고 탈북민을 대상으로 오남용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게 되면 탈북민이 마약과 굉장히 가깝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하나만 확인하면 연금 관련해서 기재부 입장은 뭔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기재부에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통일부 의견만 얘기해 주시면 곤란한데.

○통일부차관 김수경 기재부에서는 신중 검토 의견이 맞습니다만 사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유사 사례 입법례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보험료 지원이라든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같은 제도들이 있어서 조건을 주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만이라도 국민연금을 좀 보조해 주는 것이 탈북민들의 사각지대를 벗어나게 해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통일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다 좋은데 정부 측 의견을 얘기해 주실 때는 정부 측 의견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전문위원 김사우 전문위원이 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다시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보호 기간 중 신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기재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기존 체계 내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려고 하면 정착지원시설에서 나가서 자기가 직업을 구한 다음에 국민연금을 납부할 때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일부차관 김수경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에서는 ‘이미 제도가 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다. 그것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그것은 국민연금을 가입했다가 중단한 뒤에 재개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진입을 하지 못한 탈북민 같은 경우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어서 통일부 입장에서는 좀 지원을 해 주자라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러니까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하실 때 지금 얘기까지 다 해 주셔야 됩니다.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런데 기재부에 설명했는데, 방금처럼 이렇게 ‘못 받잖아요’라고 했는데도 그냥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설명을 방금처럼 하면 되잖아, 대상이 안 된다.

○권칠승 위원 그 이후에 협의를 안 하신 모양이지요?

○김기웅 위원 언뜻 이해가 안 돼서. 아니, 대상이 안 된다고 기재부에 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도……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기재부가 답변을 받고 확인을 한 다음에 추가 협의가 없었어요?

○통일부정착지원과장 하무진 실무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인권인도실의 하무진 정착지원과장이고요.

저희가 이 사안을 가지고 협의하면서 기재부한테 이 해당이 안 되고 사각지대이기 때

문에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현재 당장 이것을 수용하기는 어렵고 지금 연금 개혁이 전체적인 이슈가 있고 추가적으로 기본 철학은 연금에는 자기가 납부하는 기본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외 사례가 자꾸 축적되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일단은 신중 검토를 자기네들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게, 통일부 차원에서는 탈북민 보호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 입장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 이용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신규 가입이 어렵다고 했는데 규모는 어떻게 보나요? 그러니까 탈북민 연금 지원 대상 규모를 어느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있는지.

○ 통일부정착지원과장 하무진 현재 탈북민 중에 연금 가입자 비율이 40% 정도 됩니다. 3만 1000명 정도의 국내 거주자 중 40% 정도, 우리 국민은 70% 이상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정착지원시설에서 초기에 사회 배출되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국에 전입 초기를 대상으로 지원한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명의 탈북민이 한국에 진입을 했고 모두 성인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저희가 연금보험료의 한 80%를 지원한다면 한 4만 5000원, 5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1년이면 1인당 한 50만 원 안팎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한 200명에 대해서 1년에 한 50만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 소요가 크지는 않습니다.

○ 김준형 위원 그런데 그렇게 더해지는 게 나쁘다는 거잖아요, 돈보다도.

○ 권칠승 위원 기재부 것을 안 물어봤으면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차관님이 이런 것은 좀 챙기셔야 돼요.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이후에 추가 협의를 해서 그 추가 협의에 따른 결론을 가지고 오셔야 되지 잘못된 정보를 갖고 법안 심사를 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차관님이 향후에도 좀 챙겨 주십시오.

○ 통일부차관 김수경 알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특히 부처 간의 이야기들은 챙겨야 됩니다.

그다음에요, 자녀들 국적 있잖아요. 중국 같은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중국에서는 태어나면 국적을 주나요?

○ 통일부차관 김수경 주지 않고 보통 무국적인 상태인데 만약에 보통 그 아이의 아버지가 국적을 만들어 주고자 하면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 넘어오는 비율로 봤을 때 넘어오는 자녀들, 그리고 자녀라고 해서 꼭 미성년자라는 의미는 아니지요, 여기서 사용하는 게?

○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부모를 모시고 오는 자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하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 통일부차관 김수경 부모를 모시고 오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요, 많지는 않지만.

○ 권칠승 위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어쨌든 물론 조그마한 애도 있겠지만.

○ 통일부차관 김수경 부모를 모시고……

○ 권칠승 위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했을 때 자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 통일부정착지원과장 하무진 실무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착지원과장입니다.

하나원에 작년에 236명의 교육생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 중에 한 20% 정도는 제3국 출생 자녀를 데리고 옵니다. 한 기수당 보통 한 10명 정도의 교육생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2명 정도 자녀를 라오스, 캄보디아 경유하는 경로로 해서 같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인요한 위원 또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통일부정착지원과장 하무진 제3국 출생 자녀는 대부분 아버님이 중국 사람입니다.

○이용선 위원 무국적?

○통일부정착지원과장 하무진 예, 무국적도 상당히…… 무국적이라는 게 중국에 호적을 등록을 안 하신 케이스고 그 경우에 보통 입국 경로가 호적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태국이나 동남아를 통해서 탈북민하고 동일한 입국 경로로 오시게 되고요. 호구가 있으신 분은 하나원을 거치지 않는 경로로 그냥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서 오시기도 하고요.

○권칠승 위원 여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권칠승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제3국에서 태어난 성인이 오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칠승 위원 예, 케이스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형평성 문제 어떤 게 있지요?

○이용선 위원 아동 대상으로 비교하는 것 아닌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그렇지요.

○권칠승 위원 그런데 법문으로 보면 그렇지 않으니까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그리고 주로 국적이 있는 채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더 많기 때문에 무국적한테만 우리가 ‘북한이탈주민이야’라는 법적 지위를 주게 되면 사실상 삶은 똑같았던 건데 중국에서 국적을, 호구를 한 번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은 북한이탈주민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적이 있고 없고,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서 법적 신분이 달라지는 거지요, 혜택도 달라지고.

그리고 제3국 출생 자녀를 북한이탈주민으로 허락하게 되면 저희가 그 자녀까지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게끔 법이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제3국 자녀의 자녀까지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거라서 그 정의 자체를 이렇게 너무 넓히는 것은 지금의 현 체계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이용선 위원 차관님, 자녀라는 게 결국은 성인이 아니라는 개념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 연령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법안 개정안을 보면 교육에 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외의 지원금 등등은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이 법 개정하자는 취지 같은데, 예를 들자면 아동 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탈북자의 지원으로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형평성 문제들이 명백한 것 같은데, 나이가 가령 10대 후반이다 이렇게 되면 그런 경우는 성인과 차이가 거의 별로 없을 것도 같은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연령 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인권인도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국 아동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사실은 별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태, 왜냐하면 국

적 문제도 이게 중국이냐 한국이냐 북한이냐 이런 문제가 좀 복잡스러워서 모두 다 포섭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민통합위원회 이런 데서 건의도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전체 탈북민 학생들이 한 2000명쯤 되는데 그중에 한 1200명, 1300명, 한 70% 되는 인원들이 제3국 출생 아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북한의 어머니 그다음에 중국으로 나와 가지고 아버지는 중국인인 경우가 많고요. 이 사람들이 오면, 순수 북한이탈주민은 군대도 면제받고 대학도 특례 입학이 다 되고 정착금도 받고 집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까지 이 혜택을 다 확장하다 보면 굉장히, 예산 범위도 있고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3국 출생 아동들은 국내에 입국을 하게 되면 지금 정착금 이런 거나 집은 저희가 줄 수가 없고요. 군대도 가야 되고 대학도 일부, 특례 입학으로 다 면제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구별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정책을 하면서 차이가 있던 것은 교육 지원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혜택을 주자, 그리고 탈북자 출신의 자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국에서 태어난 건데 그분들은 교육 혜택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조금 더 해 주자 이래서 대학을 완전히 면제까지는 되지 않지만 특별전형으로 할 수 있는 대상까지는 해 주고요. 그래서 교육 관련해서는 대안학교 입학이라든가 그다음에 학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대를 굉장히 많이 해 놨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정의 규정에 따르면 이분들이 북한이탈주민과 거의 동일한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통일부 입장에서는 아직은 이 범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봐야지 그대로 다 혜택을 하게 되면 법적인 원칙도 많이 흔들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예산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 취급을 하는 것이 맞고, 교육 지원에 있어서 조금 더 범위를 넓히거나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저희가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요한 위원 중국 국적을 가진 2세가 들어올 때 차라리 ‘나는 국적이 없다’ 이라고 들어오는 것이 그러면 혜택이 더 많겠네요?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그런데 그것은 입국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북한이탈주민이 맞느냐 아니냐 하는 그 진정성의 문제 그것들은 저희가 충분한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두 마디의 자기 진술만으로 결정이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요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별하기가 아주 어려울 것 같은데요?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어려운 점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보호센터라든가 하나원 다 거치면서 저희가 그 진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전문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판별을 해 나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인요한 위원 그다음에 윤리적인 문제인데 그 여성들이 꼭 외국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서 낳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불행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런 아이와 가족을 배제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몇 명이나 돼요, 그런 1년에 들어오는…… 그렇게 명수가 많을 것 같지 않은데.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범위를 확장하는

문제가, 국내에 들어와서 여기 적응해서 평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감을 드리고요. 하지만 그 범위를 우리가 통일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진짜 북한에서 체류하던 사람이 국내에 들어와서 하는 것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위원님 말씀을 방어하다 보니까 마치 제한을 두는 것 같이 그런 인상을 드리고 있는데 거꾸로 그런 게 아니고 불과 한 1년 전, 국회에서도 제3국 아동의 보호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달에 법이 통과가 돼서 교육 지원 파트를 명시적으로 한 게 작년도 10월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해서, 이분들을 보호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의 범위를 조금 더 늘리는 것은 제가 공감을 더 하지만 보호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인요한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해마다 들어오는 것은 전체 한 200여 명 중에서 한 20%가 되고요.

○**인요한 위원** 그러면 20명이에요?

○**김준형 위원** 40명입니다.

○**인요한 위원** 40명?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40명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안학교나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총 인원이 한 2000명쯤 됩니다, 지금 보면. 그중에 한 1200명, 1270명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인원이라 지금은 이들을 교육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미스하고 있다 그런 판단하에 교육 지원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준형 위원** 그런데 똑같이 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저는 그것은 아직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요한 위원** 또 논리적으로 따지면 탈북 자체의 생산물이에요. 결과예요. 그러니까 도와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똑같이 도와줘야 돼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저희가 그것은 조금 더 의견도 모아 보고 공감대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도와주는 것은 찬성인데 그 카테고리에 넣기는 어렵다, 지금 정리하면 그런 거지요?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는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나든, 북에서 태어나든 중국에서 태어나든 어쨌든 한쪽이 우리 국민인, 남자든 여성 이든 간에 그 자녀가 한국에 들어오면 그걸 차별하는 것 자체는 정말 옳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녀라는 기준이 결국은 성인에 속하는 영역일 경우에 독립적인 여러 가지 정착 지원 이러한 것들은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아동, 가령 7세라든지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교육 지원으로 한정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연령이 좀 많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지원에 대한 개

념 규정이 다시 좀 바뀔 필요가 있다. 그게 좀 불명료한 것 같아요, 자녀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위성락 위원님.

○위성락 위원 저도 토론을 듣다 보니까 인요한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처럼—이용선 위원님도 마찬가지고—지금보다 관대하게 대우하는 것이 정책이 갈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고,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일단 특정 그룹의 자녀에 대해서는 좀 도와주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녀는 대접을 해 주는 건데 이렇게라도 하는 게 낫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이마저 형평 등을 걸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라도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간다면 어떤 그룹에, 그래도 지금 조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그룹이라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통일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혜택을 늘리고 있는, 실제로도 늘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 혜택도 늘리고 있고, 원래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온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지금은 북한 엄마를 둔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교육 지원 같은 것을 하고 있고 그런 법률도 다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만약에 무국적 삼국 아이를 북한이탈주민의 정의에 넣어 버리게 되면 극단적인 예전 하겠지만 정착지원금 1500만 원도 줘야 되는 것이고 아파트도 하나씩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정의에 넣기보다는 그 집단에 지금 당장 필요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정책적으로 확대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더 맞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당장 정의를 그렇게 확장하는 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건 권칠승 위원님.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마약류 교육하는 그 부분 좀 질문드릴게요.

지금 어차피 이 교육은 하고 있다는 거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이것 식약처에서 나와서 합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저희가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이게 지금 우리나라 법에, 마약류법 2조 1항이 아니고 51조의2에 있거든요. 51조의2에 있는데 거기 보면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인데 이게 담당이 식약처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탁 찍어 놓으면 식약처하고 제대로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와서 하는지 아니면 통일부에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냥 하는 건지.

○통일부차관 김수경 지난해에 식약처에서 저희한테 업무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요, 전국 하나센터에서 마약류 오남용 방지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칠승 위원 식약처에서 하는 거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식약처가 아마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위탁을 줘서……

○권칠승 위원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권칠승 위원 그러면 지금 시스템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인요한 위원 미국의 마약 문제는 50년도 넘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마약 환자를 엄청 많이 봤습니다. 다양한 마약을, 특강을 하라고 그래도 마약 특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두 가지예요. 따로 모아서 교육을 하면 첫째, 낙인이 찍히고 아주 좋지 않습니다. 다른 교육에 마약 교육을 슬쩍 넣는 것은 바람직스럽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혹시 마약하고 마약 유통시킨 사람이 오면 그걸 가르칩니다. 그건 아마 아무도 그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뉴욕에서 보니까 전파가 돼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가서 범죄를 배워 나온다는 의미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기네끼리 마약 통해서 돈 벌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아 놓은 것이 과연, 그중에 불순자가 있으면 마약 문제를 막는 게 아니고 오히려 확산시키는 결과가 와 버립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 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원에서 다른 교육 중에 교육시키는 것은 찬성하지만 따로 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이용선 위원 정부 쪽 입장이 별도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마약 교육을 명시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낙인효과 등……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용선 위원 그래서 그 취지에 공감하고요. 이미 지금 하고 있는데 굳이 법에서 명시해서까지 하는 것은 실익도 없고 오히려 오해의 문제만 좀 많은 것 같아서 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건 김준형 위원님.

○김준형 위원 저는 34번에 관해서 의견이 있고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이게 직장인이나 또는 고용되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농업을 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직장보다 농업이 힘들 것이고 농업보다 임업이나 어업이 더 힘들 것 같은데, 먼저 농업에서 적어도 성공 사례나 충분한 그게 있으면 이걸 확대시키는 게 맞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사하에 임업과 어업까지 한다는 결론이 나온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태 파악은 되고 있나요, 수요는 얼마인지?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배를 사야 되고 산을 사야 되는데.

○통일부차관 김수경 영농 같은 경우에 원하는 탈북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농을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그래서 3년 이상 창업 생존율이랑 비교할 때 오히려 영농 정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영농뿐만 아니라 영어·영림도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서 영농의 범위에 영어·영림을 넣는 것이 그렇게 무리는 아니다 저희 통일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형 위원 원래 있는 주민 반발은 없나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업계……

- **김준형 위원** 그러니까 농업이든 임업이든 기존에 있는 우리……
- **통일부차관 김수경** 큰 마찰이나 큰 반발이나……
- **김준형 위원** 그런 건 없어요?
- **통일부차관 김수경** 이런 것들은 저희가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나름 성공적으로 잘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위원님,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80~90건 정도 사례를 들여다봤는데 성공률이 한 90% 이상, 이쪽이 지금 좋은 쪽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점 보고드립니다.
- **이용선 위원** 38번 대안학교 공유재산 대부·사용에 관한 특례, 지금 통일부에서는 대안학교가 특례 대상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데 비인가는 너무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건가요?
-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행안부 의견도 동일한데요……
- **이용선 위원** 인가 대안학교는 긍정적으로……
-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어차피 개정안에 보시면 24조의3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는 인가받은 대안학교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 **이용선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 **통일부차관 김수경** 그런데 만약에 거기다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까지 넣어 버리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도 다 들어가게 돼 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고 그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해서 대부나 매각을 허용해 주게 되면 인가받은 대안학교들은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행안부의 의견도 그렇고 저희도 그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용선 위원** 예, 이해됩니다.
- **소위원장 김건** 그러니까 38번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대부·매각’ 해서 ‘매각’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군요?
- **통일부차관 김수경** 그렇지요. 현재 현행에서 ‘매각’만 하나 더 들어가면 인가 대안학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 **소위원장 김건** 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사우** 전문위원이 한 말씀 드리자면 한정애 의원님께서 입법하신 취지는 여명학교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자는 의도셨던 것 같은데 여명학교의 성격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니고 대안교육기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 **통일부차관 김수경** 그건 아닌 것으로…… 이 법을 이렇게 하게 되면 여명학교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용선 위원** 여명학교도 인가 대안학교는……
- **전문위원 김사우** 예.
- **이용선 위원** 그러면 혜택 대상이 되는 건데요?
-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인가 대안학교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 **권칠승 위원** 인가 대안학교면 된다는 거예요?
- **이용선 위원** 그렇지. 비인가는 너무 편차가 심하고……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너무 열악한 데도 많고 해서……

○이용선 위원 열악해서 실제 이런 걸 매입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경우들은 태반이에요.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건 그다음에 37항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 교육 실시 이게 법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당연히 교육을 실시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특별히 이렇게……

○통일부차관 김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만약에 법안이 마련된다면 저희로서도 좀 더 그 중요성을 강조할 수도 있고 더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마무리하시지요. 하나 통과시킵시다.

○소위원장 김건 예. 그러면 34항 영어·영림까지 포함하는 건 지금 별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님이하신 것은 조금 더 심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박충권 의원이 하는 연금 그것은 아직 조금 더 봐야, 논의를 좀 더 해야 될 것……

○이용선 위원 기재부랑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부차관 김수경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그다음에 박충권 의원이 발의한 교육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용선 위원 그건 포함시키지요.

○소위원장 김건 예, 그러면 하는 것으로 하고. 한정애 의원님 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수정해서 매각, 그러니까 비인가 학교는 안 들어가게 해서……

○권칠승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아까 인요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마약 관련 교육을 한다는 게 명문화되는 게……

○이용선 위원 그것은 빼는 걸로……

○소위원장 김건 그것은 그다음 항입니다, 안상훈 의원 건. 여명학교 관련 사항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안상훈 의원님이 하는 마약 교육은 낙인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하고 있으니까 굳이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전문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사우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34항은 원안대로 반영을 하고 제35항, 36항 그리고 39항은 계속 심사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제37항은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대통령령 위임 근거를 만들어서 수정하는 것으로, 그리고 제38항은 지원 대상은 대안교육기관까지만 하는 것이고 지원 범위는 공유재산 특례로서 매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소위원장 김건 37항은 원안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수정하는 건가요, 박충권 의원이 교육한다는 것은?

○전문위원 김사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업무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네 가지 업무 말고는 기존과 같이 또 법적 근거 없이 계속 교육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지를 주는 겁니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줘 가지고 약간 여지를 주는 부분입니다.

○ 소위원장 김건 통일부 입장은 어떠십니까?

○ 통일부차관 김수경 수용입니다.

○ 소위원장 김건 그러면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선 위원 좋습니다.

○ 소위원장 김건 의사일정 제34항·제37항 및 제38항은 그 취지가 반영되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35항·36항·39항은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오늘은 여기서 그만 산회를 하시는……

○ 김기웅 위원 마무리하시지요.

○ 소위원장 김건 예.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의 체계·자구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경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의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

○ 출석 위원(7인)

권칠승 김건 김기웅 김준형 위성락 이용선 인요한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전문위원 김사우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부

제1차관 김홍균

인사기획관 황소진

아시아태평양국장 김상훈

북미국장 홍지표

국제기구·원자력국장 이철

개발협력국장 박종한

국제법률국장 황준식

국제경제국장 김지희

기획재정담당관 문인석

유럽국심의관 박형철

영사안전정책과장 유병석

여권과장 정재훈

공공외교총괄과장 허정애

통일부

차관 김수경

기획조정실장 오대석

통일정책실장 김병대

인권인도실장 강종석

남북관계관리단

단장 소봉석

국립통일교육원

원장 고영환

재외동포청

차장 변철환

기획조정관 오진희